

# 통계 목록 및 서식집

(부록: 보건복지부 통계업무규정)

1997. 4

보 건 복 지 부

# 목 차

I. 통계목록	3
II. 통계서식	7
1. 법정 전염병 환자 월보	10
2. 의료기관 실태 보고	20
3. 의약품 등 생산실적 보고	30
4.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36
5. 식품위생관계업소 실태 보고	41
6. 생활보호 실적 보고	62
7. 결핵관리사업 실적 보고	67
8. 가족보건사업 실적 보고	74
9. 국제검역 상황 보고	83
10.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 보고	88
11. 부녀지도사업 실적 보고	92
12. 여성회관 운영상황 보고	96
13. 구강보건사업 현황 보고	100
14. 소년, 소녀 가장세대 현황 보고	102
15. 아동상담 현황 보고	105
16. 국내입양 현황보고	107
17. 요보호 아동현황 보고	110
18.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 현황	112
19.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124

20.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	127
21. 정신질환자요양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	130
22. 부랑인시설 수용자 동태 및 종사자 현황 .....	134
23.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종사자 현황 .....	140
24. 나병관리사업실적 .....	144
25. 성병관리사업실적 .....	147
26.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고 .....	152
Ⅲ. 보건복지부 통계업무 규정 .....	163

# I. 통 계 목 록

**여 백**

## I. 통 계 목 록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통계 종류	보고주기	승인번호	승인년월일 (변경년월일)	비 고
1	저소득층 최저생계비 계 측조사 연구	일반 조사	3년	11701	67.10.13 (95. 4. 8)	생활보호과
2	국민영양조사	지정 조사	연보	11702	73. 5. 7	보건정책과
3	법정전염병 환자월보	일반 보고	월	11703	75. 7. 29 (90. 9. 1)	방 역 과
4	의료기관 실태보고	일반 보고	연	11704	75. 7. 29 (95. 3. 6)	의료정책과
5	의약품 등 생산실적보고	일반 보고	반기	11705	75. 7. 29	약무정책과
6	부녀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일반 보고	반기	11706	76. 12. 7 (96. 10. 16)	부녀복지과
7	식품위생관계업소 실태 보고	일반 보고	분기	11707	76. 12. 7 (97. 4. 14)	식품정책과
8	생활보호 실적보고	일반 보고	분기	11708	76. 12. 7 (92. 12. 28)	생활보호과
9	결핵관리사업 실적보고	일반 보고	분기	11710	76. 12. 30 (95. 2. 11)	방 역 과
10	가족보건사업 실적보고	일반 보고	분기	11712	76. 12. 30 (90. 2. 1)	생활보건과
11	생활보호대상자 조사	일반 조사	연	11714	77. 2. 9	생활보호과
12	전국 결핵실태 조사	일반 조사	5년	11715	80. 2. 26 (96. 10. 16)	방 역 과
13	전국기생충 감염실태 조사	일반 조사	5년	11717	81. 6. 4	보건정책과
14	국제검역 상황	일반 보고	분기	11718	81. 12. 3	방 역 과
15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 료소 현황보고	일반 보고	반기	11719	81. 12. 3 (95. 3. 6)	지역의료과
16	부녀지도사업실적보고	일반 보고	반기	11724	81. 12. 3 (96. 1. 19)	부녀복지과

일련 번호	통 계 명 칭	통계 종류	보고주기	승인번호	승인년월일 (변경년월일)	비 고
17	여성회관 운영상황 보고	일반 보고	연	11725	81. 12. 3 (95. 2. 11)	부녀복지과
18	구강보건사업 현황보고	일반 보고	반기	11726	81. 12. 3 (95. 2. 11)	보건정책과
19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보고	일반 보고	분기	11728	88. 3. 22 (93. 12. 29)	아동복지과
20	아동상담 현황보고	일반 보고	분기	11729	88. 3. 22 (93. 12. 29)	"
21	환자조사	일반 조사	3년	11730	88. 7. 13 (96. 7. 31)	전산통계(담)
22	국내입양 현황보고	일반 보고	반기	11731	89. 3. 28 (93. 12. 29)	아동복지과
23	활동제약자 실태조사	지정 조사	5년	11732	90. 12. 5 (95. 3. 6)	장애인복지과
24	특수질환자 조사	일반 조사	3년	11733	89. 8. 24 (96. 10. 16)	전산통계(담)
25	요보호 아동현황 보고	일반 보고	분기	11734	94. 1. 29 (96. 10. 16)	아동복지과
26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 설치현황	일반 보고	연	11735	95. 6. 9 (96. 10. 11)	장애인복지과
27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일반 보고	분기	11736	96. 10. 16	노인복지과
28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일반 보고	분기	11737	96. 10. 16	장애인복지과
29	정신질환자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일반 보고	분기	11738	96. 10. 16	질병관리과
30	부랑인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일반 보고	분기	11739	96. 10. 16 (97. 3. 14)	생활보호과
31	아동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일반 보고	반기	11740	96. 10. 16	아동복지과
32	나병관리사업실적	일반 보고	분기	11741	96. 10. 16	방역과
33	성병관리사업실적	일반 보고	연	11742	96. 10. 16	방역과
34	공중위생관계업소실태보 고	일반 보고	분기	11743	97. 4. 11	생활보건과

## II. 통 계 서 식



**여 백**

- 법정전염병 환자 월보
- 의료기관 실태보고
- 의약품등 생산실적보고
- 부녀복지시설 및 종사자현황

# 기 관

(전화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법정전염병환자월보

19 년

법 정 전 염 병

## 1. 제1종전염병

종 별  시·군별	총 수		콜 레 라		장 티 푸 스		파라티푸스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월 계 (1)								
보 건 소								
인 중 누 계 (2)								

승인번호 : 제11703호, 승인일자 : '75. 7. 28('90. 2. 1 변경승인)

명

)

일본

시행년월일: 19 . . .

발 신: (인)

환 자 월 보 (4-1)

(단위: 명)

디프테리아		세균성이질		발진티푸스		두 창		페 스톱		황 열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⑲	⑳

## 법 정 전 염 병

2. 제2종 전염병																
질병별 보건소 (시군별)	총 수		폴리오		백일해		홍역		유행성 이하선염		마라리아		성홍열		수막구균성 수막염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발생	사망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월 계 (1)																
보 건 소																
누 계 (2)																



# 법 정 전 염 병

## 3. 예방접종실적

종 별  시·군별	총 계	일 본 뇌 염			
		소 계 ① + ②	기 초 ①		추 가 ②
			1 차	2 차	
월 계 (1)	계				
	무 료				
보 건 소					
연 중 누 계 (2)	계				
	무 료				

# 환 자 월 보 (4-3)

\* 점선- (상단(계) : 자비+무료  
하단(무료) : 무료

(단위 : 명)

B 형 감 염					콜 레 라	장 티 푸 스
소 계 ① + ②	기 초 ①			추 가 ②		
	1 차	2 차	3 차			



## 법 정 전 염 병

### 4. 장티푸스 보균여부 검사실적

구 분		대 상 별	계	식품위생업소 종 사 자	집단급식소 종 사 자
연 중 계 획		①			
실 적	월 계	②			
	누 계	③			
양 성 자	월 계	④			
	누 계	⑤			

### 5. 콜레라 보균여부 검사실적

(단위 : 명)

구 분		대 상 별	계	어부,어패류 취 급 자	오염지역으로부터 입국하는자중, 역소상, 보건소장 이 인정하는자	설사환자	기 타
연 중 계 획		①					
실 적	월 계	②					
	누 계	③					
양 성 자	월 계	④					
	누 계	⑤					

### 6.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항체검사실적

(단위 : 명)

구 분		대 상 별	(6) 계	(7) 특 수 입 태 부	(8) 집객부등 위생분야 종사자	(9) 동성 연애자	(10) 마 약 및 혈액성분제제 상 습 사 용 자	(11) 기 타
연 중 계 획		①						
실 적	월 계	②						
	누 계	③						
양 성 자	월 계	④						
	누 계	⑤						

## 환 자 율 보 (4-4)

(단위 : 명)

상수도, 간이 상수도 및 공 동우물관리자	과 거 2년 간 환 자 또 는 보 균 자	환자발생지역 주 민	가 두 식 품 판 매 자	부랑인등집단수 용시설중보건소 장이인정하는자	보 건 소 장 이 지 정 하 는 취약지역주민

### 7. 약품수급상황

구 분		종 별		콜레라(ml)	장티푸스(ml)	일본뇌염(ml)	간염(도스)
전	월 말 재 고 량	①					
월	중 수 배 량	②					
총	재 고 량	③					
월	중 사 용 량	④					
월	말 재 고 량	⑤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03	보고종별	월 보	계 목	법정전염병 환자월보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월말로부터 10일 이내	
표 두	1. 제1종전염병				
표 측	○ 제1종전염병별로 1개월간의 발생수 및 사망자수를 기입한다.				
	○ 관내 보건소별로 작성하고 (1)은 월중 각 보건소의 총계이며 (2)는 1월부터 매월 합계한 수를 기입한다.				
표 두	2. 제2종전염병				
표 측	○ 제2종전염병별로 1개월간의 발생수 및 사망자수를 기입한다.				
	○ 관내 보건소별로 작성하고 (1)은 월중 각 보건소의 총계이며 (2)는 1월부터 매월 합계한 수를 기입한다.				
표두 및	3. 예방접종 실적				
표 측	○ 예방접종실적은 접종내용별로 접종한 실인원수를 기입한다.				
	○ 각항의 소계 = ①항+②항				
	○ 보건소별로 각각 작성하고 (1)에 보건소 전체총수를 기입하며 (2)에는 1월부터 매월 합산한 수를 기입한다.				
	* “계”란에는 무료와 유료로 합한 전체수를 기입하고 무료란에는 실질적인 무료접종 실적을 기입한다.				
표 측	4. 장티푸스 보균여부 검사실적				
	(1) 장티푸스 보균여부 검사실적은 대상별로 연중 계획수를 기입한다.				
	(2) 실적 월계는 대상별 종사자중 매월 검사실적수를 기입한다.				
	3) 누계란은 매월 합한수를 기입한다.				
	(4), (5)양성자 월계는 대상자별 종사자중 양성자인수를 매월 검사실적수로 기입하고 누계란은 매월 합한수를 기입한다.				

표 측	<p>5. 콜레라 보균여부 검사실적 (4.의 작성요령과 동일)</p> <p>6. 후천성면역결핍증(AIDS) 보균여부 검사실적</p> <p>① 보균여부검사실적은 대상별 연중계획수를 기입한다.</p> <p>②, ③실적월계는 대상별로 매월 검사실적수를 기입하고 누계란은 매월 합한수를 기입한다.</p> <p>④, ⑤양성자 월계는 대상자별로 양성자인수를 매월 검사실적수를 기입하고 누계란은 매월 합한수를 기입한다.</p>
표 두	<p>⑥, ⑦~⑪까지의 수처함계를 기재</p> <p>⑦보건사회부령 제754호(84.9.8)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에서 정한 특수업태부를 말함.</p> <p>⑧식품위생법, 공중위생법 및 안마사에 관한 규칙에 의한 건강진단증 발급대상자중 보건사회부령 제754호(84.9.8)로 정한 성병에 관한 진단을 받아야 하는 자(특수업태부 제외)</p> <p>⑨이성간이 아닌 동성간의 연애자</p> <p>⑩주사기를 사용하여 마약을 상습복용하는 자 및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혈액성분 계제를 투여받는 자</p> <p>⑪, ⑦~⑩을 제외한 나머지의 검사자</p>
표 측	<p>7. 약품수급 현황</p> <p>①종류별 전염병약품중 전월말 재고량을 기입한다.</p> <p>②종류별 전염병약품중 월중 수배량을 기입한다.</p> <p>③총재고량은 전월말 재고량+월중수배량=총재고량 식으로 기입한다.</p> <p>④종류별 전염병약품중 월중사용한 약품량을 종류별로 기입한다.</p> <p>⑤월말현재 재고량은 총수배량-월중사용량=월말현재 재고량식으로 기입한다. (③)                      (④)                      (⑤)</p>

# 기 관

(전화 :

19      년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의료기관실태보고

의 료 기 관 실 태

1. 종합병원																				
시.군.구 별	설 립 구 분	기관명칭	병 실 별	년 말 현 재	병 상 수	전 년 말 현 재	입 원 환 자 수	년 중 신 입 원	환 자 실 인 원	년 중 퇴 원	환 자 실 인 원	년 말 현 재	입 원 환 자 수	년 중 입 원 환 자	연 인 원 수	년 중 외 래 환 자	실 인 원 수	년 중 외 래 환 자	연 인 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계	①																
			일	②																
			전	③																
			결	④																
			정	⑤																
			계	⑥																
			일	⑦																
			전	⑧																
			결	⑨																
			정	⑩																
			계	⑪																
			일	⑫																
			전	⑬																
			결	⑭																
			정	⑮																
			계	⑯																
			일	⑰																
			전	⑱																
			결	⑲																
			정	⑳																
			계	㉑																
			일	㉒																
			전	㉓																
			결	㉔																
			정	㉕																
			계	㉖																
			일	㉗																
			신	㉘																
			결	㉙																
			정	㉚																

승인번호 : 제11704호, 승인일자 : '75. 7. 29('93. 12. 29, 95. 3. 6 변경승인)



## 의 료 기 관

2. 병 원																					
시.군.구 별	설 립 구 분	기관명칭	병 실 별	년 말 현 재	병 상 수	전 년 말 현 재	입 원 환 자 수	년 중 실 입 원	환 자 실 인 원	년 중 퇴 원	환 자 실 인 원	년 말 현 재	입 원 환 자 수	년 중 외 래 환 자	연 인 원 수	년 중 외 래 환 자	실 인 원 수	년 중 외 래 환 자	연 인 원 수		
	(1)	(2)	(3)	(4)	(5)	(6)	(7)	(8)	(9)	(10)	(11)										
			계 ①																		
			일 반 ②																		
			전 염 ③																		
			결 핵 ④																		
			정 신 ⑤																		
			계 ⑥																		
			일 반 ⑦																		
			전 염 ⑧																		
			결 핵 ⑨																		
			정 신 ⑩																		
			계 ⑪																		
			일 반 ⑫																		
			전 염 ⑬																		
			결 핵 ⑭																		
			정 신 ⑮																		
			계 ⑯																		
			일 반 ⑰																		
			전 염 ⑱																		
			결 핵 ⑲																		
			정 신 ⑳																		
			계 ㉑																		
			일 반 ㉒																		
			전 염 ㉓																		
			결 핵 ㉔																		
			정 신 ㉕																		
			계 ㉖																		
			일 반 ㉗																		
			전 염 ㉘																		
			결 핵 ㉙																		
			정 신 ㉚																		
			계 ①																		
			일 반 ②																		
			전 염 ③																		
			결 핵 ④																		
			정 신 ⑤																		





### 의료기관실태보고(4-3)

3. 의 원																	
시·군·구·별	기관종별	기관수	년 병 말 상 현 재 수	의 료 인 력													
				계	의 사	치 과 의 사	한 의 사	조 산 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임 상 병 리 사	방 사 선 사	물 리 치 료 사	작 업 치 료 사	치 과 기 공 사	치 과 위 생 사	약 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의 원																
	치과의원																
	한 의 원																
	부속의원																
	의 원																
	치과의원																
	한 의 원																
	부속의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의 원																		
	치과의원																		
	한의원																		
	부속의원																		

## 의 료 기 관 실 태

### 4. 조 산 소

원 안 과 동 일

### 5. 시술소 및 치과기공소

원 안 과 동 일

보 고 (4-4)

6. 의료기관 신·증설 예정사항								
기관명칭	종 류	개 설 자 (법인명)	신·증축지	건축허가		병상수	개원 예정 일	비 고
				m <sup>2</sup>	일자			
(1)	(2)	(3)	(4)	(5)	(6)	(7)	(8)	(9)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04	보고종별	년 보	제 목	의료기관실태보고(1)(2)(3)(4)
보고기관	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년말로부터 20일 이내	
표 두	<p>1. 종합병원(4-1)</p> <p>(1) 설립주체별로 국립, 공립(지방공사등), 법인(의료법인, 재단법인등), 개인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p>(2) 의료기관명칭을 기입한다.</p> <p>(4) - (11)은 병실별로 구분하여 기입하되</p> <p>(4) 년말현재 보유병상수를 기입한다.</p> <p>(5) 전년말(12월말) 현재 입원하고 있던 환자수를 기입한다.</p> <p>(6) 년중 새로이 입원한 환자수(초진환자수)를 기입한다.</p> <p>(7) 년중 퇴원(치유, 완쾌, 사망, 기타)한 환자의 실수를 기입한다.</p> <p>(8) 년말 현재 입원환자수 = 전년말현재 입원환자수 + 년중 신입원환자실수 - 년중퇴원환자실수</p> <p style="padding-left: 20px;">[ 즉 (8) = (5) + (6) - (7) ]</p> <p style="padding-left: 20px;">※ 년말현재 입원환자수 ≤ 년말현재 보유병상수</p> <p>(9) 년중 매일 입원한 환자수를 합한수(초진+재진)를 기입한다.</p>				
표 두	<p>* 한사람의 환자가 30일간 입원했을 경우 실인원은 1인이 되고, 연인원은 30인이 됨.</p> <p>(10) 년중 외래진료를 받은 실인원(초진)을 기입한다.</p> <p>(11) 년중 외래환자 총인원수(초진+재진)를 기입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 1인이 7일간 외래진료를 받았을 경우 실인원은 1인이며, 연인원은 7인이 됨.</p>				

	<p>(12) 연말현재 의료기관종사인력[(13)+.....+(27)]의 총수를 기입한다.</p> <p>(13)-(27)은 의료인력종별로 기입하되</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사에 있어서는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그 시설에 규정된 전진료시간을 통하여 근무한 자를 "상근의사"로</li> <li>- 그 이외의 의사(시간제근무)를 "비상근의사"로 구분하여 기입한다.</li> </ul> </li> </ul> <p>2. 병원(4-2)</p> <p>(종합병원 작성요령과 동일)</p> <p>3. 의원(4-3)</p> <p>(종합병원 작성요령과 동일)</p> <p>4. 조산소(4-4)</p>
표 두	종합병원 작성요령과 동일
표 측	시부(시이상지역), 군부(읍이하지역)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표두 및 표 측	<p>5. 시술소 및 치과기공소(4-4)</p> <p>의료유사업(접골사, 침사, 구사), 안마시술소 및 치과기공소의 개소수와 근무중인 해당 면허자격자수를 기입한다.</p>
표 두	<p>6. 의료기관 신·증설 예정사항(4-4)</p> <p>연중 건축허가된 의료기관의 내용을 기입한다.</p>

# 기 관 명

(전화 :                    )

분류기호 :

수 신 :

시행년월일 : 19 . . . . .

참 조 :

발 신 :                    인

제 목 : 의약품등생산실적보고(2-1)                    19    년    반기

허가총업체수	기 중 가 동 상 황		비 고
	생산업체수	미보고업체수	
①	②	③	
개소	개소	개소	

## 허 가 업 체 별 생 산 현 황

번 호	업체명	대표자명	제 품 구 분 및 생 산 품 목 수											
			원료의약품		완제의약품		화 장 품		의 료 용 구		위 생 용 품		의약부외품	
			허 가 품목수	보 고 품목수	허 가 품목수	보 고 품목수	허 가 품목수	보 고 품목수	허 가 품목수	보 고 품목수	허 가 품목수	보 고 품목수	허 가 품목수	보 고 품목수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⑯	⑰	⑱

가. 생산업체수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05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의약품등 생산실적보고
보고기관	특별시, 직할시, 시·도		보고기한		반기말로부터 20일 이내
〈표 1〉 표 두	<p>① 의약품, 생산업체의 반기말현재 총업체수를 기입한다.</p> <p>② ①의 허가총업체수중 반기중 생산업체수를 기입한다.</p> <p>③ ①의 허가총업체수중 반기중 보고를 하지 않은 업체수를 기입한다.</p> <p>④ ⑤ ⑥</p> <p style="padding-left: 20px;">가. 생산업체</p> <p style="padding-left: 20px;">나. 미제출업체</p> <p style="padding-left: 20px;">다. 휴업업체의 일련번호, 작업체명 대표자명을 구분하여 기입한다.</p> <p>⑦ 각 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의 총허가 품목수를 기입한다.</p> <p>⑧ 각 업체에서 원료의약품의 총허가품목수중 반기중 보고한 품목수를 기입한다.</p> <p>⑨ ⑩ 완제의약품 ⑪⑫의약품부외품 이상 ⑨부터 ⑫까지의 작성요령은 상기 ⑦⑧의 작성요령에 준한다.</p>				
〈표 2〉 표 두	<p>①②③ 제조업소의 명칭과 소재지, 전화번호를 기입한다.</p> <p>④ 제조업 허가번호를 기입한다.</p> <p>⑤ 제조업소의 허가 년 월 일을 기입한다.</p> <p>⑥ 허가된 제조업종을 기입한다. "예" 의약품, 습관성 의약품, 화장품, 위생용품, 의료용구, 부외품, 독극물 등</p> <p>⑦ 제품 제조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일반의약품 등</p>				

1. 생산실적

- ① 제조품목 허가번호를 기입한다.
- ② 제제를 구분하여 기입한다. "예" 수제, 산제 등
- ③ 제조품의 분류번호를 기입한다.
- ④ 생산한 제품명을 기입한다.
- ⑤ 생산한 제품의 규격을 기입한다.
- ⑥ 생산한 제품의 포장단위를 기입한다.
- ⑦⑧⑨ 반기중 의약품의 생산량, 생산단가, 생산가격을 기입한다.
- ⑩⑪ 반기마다 의약품 생산량을 합산한 누계를 생산량과 생산가격으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⑫ 반기말 현재 의약품의 재고량을 기입한다.
- ⑬ 반기중 생산량, 생산단가, 생산가격을 각각 합산한 계를 기입한다.

2. 운영위원

- ① 의약품 제조업소에 종사하는 반기말 현재 기술자의 수를 기입한다.
- ② 의약품 제조업소에 종사하는 반기말 현재 사무원의 수를 기입한다.
- ③ 의약품 제조업소에 종사하는 반기말 현재 노무원의 수를 기입한다.
- ④ 의약품 제조업소에 종사하는 반기말 현재 기타 직원수를 기입한다.
- ⑤ 계 = ① + ② + ③ + ④

3. 허가품목에 대한 생산품목의 대비

- ① 작업소의 허가품목수를 기입한다.
- ② 작업소의 반기중 생산품목수를 기입한다.

4. 미생산품목에 대한 사유를 정확히 기재한다.

5. 미생산품목 허가번호를 기재한다.

# 기 관 명

(전화번호 : )

분류기호 :

수 신 :

제 목 : 부녀복지시설(모자보호, 미혼모) 및 종사자 현황

시행년월일 : 199

발 신 : 인

(19 년 상·하반기보)

1. 부녀복지시설현황

가. 모자보호시설현황

(단위 : 명)

구분	1. 전기말수용인원	2. 기 중 입 소													3. 기 중 퇴 소							4. 기 말 수 용									
		계	세 대 주	어머니의 부양자녀		어머니의 노령부양자		여성세대가 된 이유						계	세 대 주	어머니의 부양자녀		세대주퇴소사유			계	세 대 주	어머니의 부양자녀								
				남	여	남	여	소	병 사	전 이	무 배 우	기 타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시설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나. 미혼모 시설 현황

구분	1. 전기말수용인원	1. 기 중 입 소								3. 기 중 퇴 소						4. 기말수용현황		
		계	입 소 의 퇴(기관별)								계	퇴 소 시 (직업)						
			종 교 단 체	행 정 기 관	여성복지상담소	입 양 기 관	병 원	본인또는 부모의퇴	기 타	취 업		복 학	결 혼	자 영 사 업	모 자 시 설 입 소		기 타 (귀가등)	
시설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승인번호 : 제11706호, 승인일자 : '76. 12. 7('94. 1. 29, '95. 2. 11, '96. 10. 16 변경승인)

2. 부녀복지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시설종별 / 시설명	종사자														해당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계	시설장	총무	생활지도원	생활보호조원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사무원	영양사	취사부	세탁부	물리치료사	경비원	운전원	기타	계	1급	2급	3급
계																				
모자보호시설																				
모자자립시설																				
모자일시보호시설																				
미혼모시설																				
일시보호소																				
선도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06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부녀복지시설(모자보호, 미혼모)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반기말로부터 20일 이내	
표 두	<p>(모자보호시설 현황)</p> <p>1. 전기말 수용인원            (1) : 전기말 수용인원수를 기입한다.</p> <p>2. 기중입소현황            (2) : 기중 입소한 총 인원수를 기입하며,            (2)=(3)+(4)+(6)+(7)이 되어야 한다.            (3) : 기중 입소한 세대주(어머니의 수와 같음)의 수를 기입하며,            (3)=(8)과 일치            (4)-(5) : 기중 입소한 어머니의 부양자녀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6)-(7) : 기중 입소한 어머니의 노령부양자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8) : 여성세대가 된 이유를 합계            (8)=(9)+(10)+(11)+(12)+(13)+(14)            (9)-(13) : 기중입소한 세대주가 여성세대가 된 이유중 병사, 사고사, 전사, 이혼, 무배우자로 입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            (14) : 부녀가(9)-(13) 이외의 사유로 입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3. 기중퇴소 현황            (15) : 기중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하며,            (15)+(16)+(17)+(18)+(19)+(20)가 되어야 한다.            (16) : 기중퇴소한 세대주의 수를 기입하며,            (16)=(21)과 일치            (17)-(18) : 기중 퇴소한 어머니의 부양자녀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19)-(20) : 기중 퇴소한 어머니의 노령부양자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21)=(22)+(23)+(24)+(25)</p>				

승인번호	11706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부녀복지시설(모자보호, 미혼모)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반기말로부터 20일 이내	
표 두	<p>(22) : 생계독립으로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  (23) : 퇴소후 모자세대 자립장에 입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  (24) : 결혼으로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  (25) : (22)·(23)·(24) 이외의 사유로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4. 기말수용현황  (16) : 기말 현재 총 인원수를 기입한다.  (17) : 기말 현재 세대주의 수를 기입한다.  (28) - (29) : 기말 현재 어머니의 부양자녀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30) - (31) : 기말 현재 어머니의 부양자녀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참 고>	<p>(1)부터 (31)까지의 본 통계표 작성에 있어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 전기말 현재 수용인원(1)+기중 입소한 총 인원수(2)=기중 퇴소한 총 인원수(15)+기말 현재 수용 인원수(26)</p>				
<표 측>	관내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설명칭을 기입한다.				
표 두	<p>(미혼모시설 현황)</p> <p>1. 전기말 수용인원  (1) : 전기말 수용인원수를 기입한다.</p> <p>2. 기중입소현황  (2) : 기중입소한 총 인원수를 기입하며,  (2)=(3)+(4)+(6)+(7)+(8)+(9) 이 되어야 한다.  (3) - (8) : 기중 입소한 입소자의 입소의뢰 기관인 종교단체, 행정기관, 여성복지상담소, 입양기관, 병원, 본인 또는 부모의뢰로 입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  (9) 미혼모가 (3) - (8)이외의 상로 입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3. 기중퇴소 현황  (10) : 기중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하며  (10) = (11)+(12)+(13)+(14)+(15)+(16)이 되어야 한다.</p>				



승인번호	11706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부녀복지시설(모자보호, 미혼모)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반기말로부터 20일 이내	
표 두	<p>(11)~(15) : 기중 퇴소한 자의 퇴소시 직업형태인 취업, 복학, 결혼, 자영사업 모자시설로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16) : (11)~(15)이외의 사유인 귀가등 사유로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4. 기말 수용 현황</p> <p>(17) : 기말 현재 총 인원수를 기입한다.</p>				
표 측	관내 시설별로 구분하여 시설명칭을 기입한다.				
표 두	<p>(부녀복지시설 종사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명 및 종사자 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 해당시설의 종사자수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2급, 3급)소지자 구분인원수를 기입한다.</li> </ul>				
표 측	○ 부녀복지시설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				

- 식품위생관계 실태 보고
- 생활보호 실적 보고

# 기 관

수 신 :  
 참 조 :  
 제 목 : 식품위생관계 실태보고

(전화번호 :  
 (19 .

1. 식품위생업소 및 감시현황  
 가. 식품접객업 등

구 분			당월말 현 재 업소수	위 생 감 시		위 반 건 수		위 반 내			
				누 계	당 월	누 계	당 월	사 실 위 반	업 태 위 반	미 성 년 자 출 입	및 주 류 판 매
업 종 별			1	2	3	4	5	6	7	8	9
식 품 접 객 업	총 계		1								
	소 계		2								
	휴 게 음 식 점 기 타	다 방	3								
		제과점	4								
		기 타	5								
	일반음식점영업		6								
	단란주점영업		7								
	유흥주점영업		8								
	집 단 급 식 소		9								

승인번호 : 제11707호, 승인일자 : '76. 12. 7('91. 4. 9, '91. 12. 9, '93. 12. 29, '96. 2. 29,



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의종류	구분	당월말현재업소수	위생감시		위반건수		위 반 내 용																
			누	당	누	당	시	의	요	제	주	배	성	보	유	첨	식	표	자	위	개	기	
			계	월	계	월	설	료	건	조	원	합	분	통	가	품	의	가	위	강	인	위	태
	식품의 종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식품 제조· 가공 업	총 계	1																					
	과자류	2																					
	당류	3																					
	아이스크림제품류	4																					
	유가공품	5																					
	식육제품	6																					
	어육제품	7																					
	절임식품	8																					
	김치제조	9																					
	통조림·병조림	10																					
	건포류	11																					
	두부류	12																					
	식품 제조· 가공 업	소 계	13																				
		식물성정제유	14																				
		동물성정제유	15																				
		압착식용유	16																				
		미야가란·쇼트닝	17																				
		기타유	18																				
	식품 제조· 가공 업	소 계	19																				
		면류	20																				
		인스탄트면류	21																				
	다	22																					
	청량음료	23																					
	레토르트식품	24																					
	건강보조식품	25																					
	특수영양식품	26																					
	조미식품	27																					
	도시락	28																					
	주류	29																					
	인삼제품	30																					
	식용얼음	31																					
	벌꿀	32																					
	기타식품류	33																					
	가공식품	34																					



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영업 의 종 류	구 분  식품의 종류	당월말 현재 업소수	위생감시		위반건수		위 반 내 용											
			누 계	당 월	누 계	당 월	시 설 위 반	원 료 의 구 비 요 건 반	위 조 준 · 위 가 공 반	기 준 · 성 분 위 배 합 반	성 분 규 격 위 반	유 통 기 준 위 반	첨 가 물 사 용 반	기 준 위 의 표 시 기 준	표 시 의 광 고 위 반 및 허 위 · 과 대	자 가 품 질 관 리 위 반	개 장 인 단 위 등	기 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즉 석 판 매 제 조 · 가 공 업	총 계	1																
	과 자 류	2																
	전 통 떡 류	3																
	아 이 스 크 림 류	4																
	식 육 제 품 류	5																
	두 부 류	6																
	식 용 유 지 류	7																
	면 류	8																
	다 류	9																
	김 치 · 절 임 식 품 류	10																
	청 량 음 료 류	11																
	도 시 락 류	12																
	기 타 식 품 류	13																

※ 제품의 유형은 식품위생법시행규칙 제24조의2 관련[별표 11]을 참고할 것.





라. 식품첨가물제조업 및 식품소분업

구 분  영업의 종류	당월말 현재 업소수	위생감시		위반건수		위 반 내 용							
		누 계	당 월	누 계	당 월	사 설 위 반	성 분 규 격 위 반	보 유 통 기 준 위 반	첨 가 물 위 사 용 반	식 품 등 의 표 시 기 준	및 허 위 · 과 대	표 의 광 고 위 반	자 관 가 리 품 위 질 반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식품첨가물제조업	1												
식품소분업	2												

(단위: 개소, 건수)

행 정 처 분														고 발 건 수			폐 기				
계	영 업				품 목				품 목 류			형 사 고 발	과 태 료	시 설 개 수	사 정 지 시	계	허 가	무 허 가	건 수	폐 기 량 (kg)	폐 기 금 액 (만 원)
	취 소	영 업 소 폐 쇄	정 지		체 조 금 지	정 지		체 조 금 지	정 지												
			정 지	과 징 금		정 지	과 징 금		정 지	과 징 금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마. 식품운반·판매·보존업 등

영업의 종류		구 분		위생감시		위반건수		위 반 내 용						
				당월말 현 재 업소수	누	당	누	당	시	표 시 기 준 위 반	고위	비보 냉	위불	기
					계	월	계	월	설 위 반		사 가 격반		생 관 리량	
1	2	3	4	5	6	7	8	9	10	11				
식 품 운 반 업		1												
식 품 판 매 업	소 계	2												
	식 육 판 매 업	3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4												
	우 유 류 판 매 업	5												
	식 용 얼 음 판 매 업	6												
	식품자동판매기영업	7												
	유통 전문 판매업	8												
	건강보조식품판매업	9												
	기관	소 계	10											
	타	식품 등 수 입 업	11											
식품	백 화 점 등 판 매 업	12												
식 품 보존업	소 계	13												
	식품 조사 처리업	14												
	식품냉동·냉장업	15												
용 기 · 포 장 류 제 조 업		16												
용 기 류 제 조 업		17												



2. 제품검사,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사항

구 분 식품의 종류			제 품 수 거 검 사																
			검사건수		부 적 합 건 수	행 정 처 분											형 사 고 발	과 태 료	시 설 개 수
			누 계	당 월		영 업			품 목		품 목 류		형 사 고 발						
					취 소	영 업 소 폐 쇄	정 지 과 징 금	체 조 금 지	정 지 과 징 금	체 조 금 지	정 지 과 징 금	정 지 과 징 금	정 지 과 징 금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영 업 의 종 류	총	계	1																
	과	차	류	2															
	당	류	3																
	아	이	스	크	림	제	품	류	4										
	유	가	공	품	5														
	식	육	제	품	6														
	어	육	제	품	7														
	절	임	식	품	8														
	김	치	제	조	9														
	통	조	림	·	병	조	림	10											
	건	포	류	11															
	두	부	류	12															
	식	용	유	지	13														
	면	류	14																
	다	류	15																
	청	량	음	료	16														
	인	스	탄	트	식	품	17												
	건	강	보	조	식	품	18												
	특	수	영	양	식	품	19												
	조	미	식	품	20														
	도	시	락	21															
	주	류	22																
	인	삼	제	품	23														
	식	용	얼	음	24														
	기	타	식	품	류	25													
첨	가	물	26																
식	품	소	분	업	및	기	타	27											



3. 위생교육등 기타현황

가. 부정·불량식품단속(유통관리)

구 분  지 역 별		단 지  역  속 수	단 속 회 수			동 원 인 원			
			계	자 체 단 속	합 동 단 속	계	식 공 품 위 생 원	경 공 무 찰 원	기 타
		1	2	3	4	5	6	7	8
계	1								
학 교 주 변	2								
시 장 주 변	3								
유 원 지	4								
영 세 민 지 역	5								
기 타 지 역	6								

나. 위생교육실태 및 위생분야 공무원 현황

구 분		식 품 접 객 업 소					
		대 상 인 원			교 육 인 원		
		계	업 주	종 사 자	계	업 주	종 사 자
		1	2	3	4	5	6
당 월	1						
누 계	2						

(단위 : 회수, 명, 건수)

단 속 건 수	위 반 건 수							조 치 내 용				
	계	무식 허 가품	부변 질 식품	비보 냉 장관	표 시 기 준	검 사 부 적	기 타	고 발	시 정 지 시	폐 기 건 수	폐 기 량 (kg)	폐 기 금 액 (금 액)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단위 : 명)

식 품 제 조 업 소								위생분야공무원현황		
대 상 인 원				교 육 인 원				정원 ( )	현원 ( )	식품 및 공중 위생감시원
계	업 주	위 생 관리인	종사자	계	업 주	위 생 관리인	종사자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07	보고종별	월보	제 목	식품위생관계 실태현황
보고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월말로부터 10일 이내	
표 두	<p>1. 식품위생업소 및 감시현황</p> <p>가. 식품집객업 등</p> <p>(1) 당월말 현재 허가업소수를 기재</p> <p>(2) 당월까지의 위반누계를 기재(당월+전월말 현재 누계)</p> <p>(3) 당월의 위생감시 실시건수를 기재</p> <p>(4) 당월까지의 위반누계를 기재(당월+전월말현재 누계)</p> <p>(5) 당월의 위반건수를 기재</p> <p>(6)~(11)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되 1개업소에서 1개 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유형 한곳에만 기재</p> <p>(12) ⑬+⑭+⑮+⑯+⑰을 기재하되 (5)와 일치하여야 한다.</p> <p>(13) 당월의 허가취소 업소수를 기재</p> <p>(14) "    "    영업정지       "</p> <p>(15) "    "    시설개수       "</p> <p>(16) "    "    시정지시       "</p> <p>(17) "    "    과징금건수 기재</p> <p>(18) "    "    과징금액 기재</p> <p>(19) "    "    ⑳+㉑ 기재</p> <p>(20) "    "    허가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함.</p> <p>(21) "    "    무허가업소 고발건수를 기재함.</p> <p>(22) "    "    폐기건수를 기재함.</p> <p>(23) "    "    폐기량을 기재함.</p> <p>(24) "    "    폐기에 대한 금액을 기재함.</p>				

표 두	<p>나. 제조·가공업소등</p> <p>(1) 당월말 현재 허가업소수를 기재</p> <p>(2) 당월까지의 누계를 기재(당월+전월말 현재 누계)</p> <p>(3) 당월의 위생감시 실시건수를 기재</p> <p>(4) 당월까지의 위반누계를 기재(당월+전월말 현재 누계)</p> <p>(5) 당월의 위반건수를 기재</p> <p>(6)~(11)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구분 기재하되 1개업소에서 1개이상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중한 유형 한곳에만 기재하되 (5)와 일치하여야 함.</p> <p>(12) ⑬+⑭+⑮+⑯+⑰+⑱를 기재</p> <p>(13) 당월의 허가취소 업소수를 기재</p> <p>(14) " 품목허가취소 "</p> <p>(15) " 영업정지 "</p> <p>(16) " 품목정지 "</p> <p>(17) " 시설개수 "</p> <p>(18) " 시정지시 "</p> <p>(19) 과징금건수를 기재</p> <p>(20) 과징금액 기재</p> <p>(21) ㉒+㉓ 기재함.</p> <p>(22) 당월의 허가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함.</p> <p>(23) " 무허가업소 "</p> <p>(24) " 폐기건수를 기재함.</p> <p>(25) " 폐기량을 기재함.</p> <p>(26) " 폐기품에 대한 금액을 기재함.</p>
표 두	<p>다. 판매·운반처리업 등</p> <p>(1) 당월말 현재 업소수를 기재</p>

표 두	<p>(2) 당월까지의 누계를 기재(당월+전월말 현재 누계)</p> <p>(3) 당월의 위생감사 건수를 기재</p> <p>(4) 당월까지의 위반누계를 기재(당월+전월말 현재 누계)</p> <p>(5) 당월의 위반건수를 기재</p> <p>(6)~(11) 위반건수를 유형별로 구분 기재하되 1개업소에서 1개이상 위반 사항이 있을 경우 중한 기준 한곳에만 기재</p> <p>(12) ⑬+⑭+⑮+⑯을 기재하되 (5)와 일치하여야 함.</p> <p>(13) 당월의 허가취소 업소수를 기재</p> <p>(14) "    "    영업정지                   "</p> <p>(15) "    "    시설개수                   "</p> <p>(16) "    "    경고·시정지시           "</p> <p>(17) ⑰+⑱를 기재</p> <p>(18) 당월의 허가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p> <p>(19) "    "    무허가업소에 대한                   "</p> <p>(20) "    "    폐기건수를 기재</p> <p>(21) "    "    폐기량을 기재</p> <p>(22) "    "    폐기품에 대한 금액을 기재</p> <p>2. 제품검사·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사항</p> <p>(1) 당월까지의 제품수거건수를 기재(당월+전월말 현재 누계)</p> <p>(2) 당월의 제품 수거건수를 기재</p> <p>(3) 당월의 제품검사 결과 부적합 건수를 기재</p> <p>(4)                   "                   "                   허가취소(품목허가취소 포함)건수를 기재</p> <p>(5) 당월의 제품검사 결과 영업정지(품목정지 포함) 건수를 기재</p> <p>(6) 당월의 제품검사 결과 시정지시건수를 기재</p> <p>(7)                   "                   "                   기타 행정처분 건수를 기재</p>
-----	---

표 두	<p>(8) 당월의 제품검사 결과 고발건수를 기재</p> <p>(9) " 허가업소의 고발건수를 기재</p> <p>(10) 당월의 제품검사 결과 무허가업소의 고발건수를 기재</p> <p>(11) 당월까지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건수를 기재 (당월+전월말현재 누계)</p> <p>(12) 당월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건수를 기재</p> <p>(13) ⑭+⑮+⑯+⑰+⑱을 기재</p> <p>(14) 당월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허가취소(품목허가취소 포함) 처분한 업소수를 기재</p> <p>(15) 당월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영업정지(품목정지 포함) 처분한 업소수를 기재</p> <p>(16) 당월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시정지시한 업소수를 기재</p> <p>(17) 당월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기타 행정처분한 업소수를 기재</p> <p>(18) 과징금 건수를 기재</p> <p>(19) 과징금액을 기재</p> <p>(20) ㉑+㉒를 기재</p> <p>(21) 당월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고발된 허가업소수를 기재</p> <p>(22) 당월의 과대광고 및 표시기준 위반으로 고발된 무허가 업소수를 기재</p> <p>3. 위생교육등 기타현황</p> <p>가. 부정불량식품 단속(유통관리)</p> <p>(1) 당월 단속 지역수를 기재</p> <p>(2) 당월의 단속회수를 기재(자체단속+합동단속)</p> <p>(3) " 자체단속회수를 기재</p>
-----	---

	<p>(4) 당월의 합동단속회수를 기재</p> <p>(5) " 단속에 동원된 인원수를 기재</p> <p>(6) " 단속에 동원된 식품위생공무원수를 기재</p> <p>(7) " 단속에 동원된 경찰공무원수를 기재</p> <p>(8) " 단속에 동원된 기타 공무원수를 기재</p> <p>(9) " 유통업소 단속건수를 기재</p> <p>(10) " 유통업소 단속결과 위반업소수를 기재</p> <p>(11) " 유통업소 단속결과 무허가식품 판매업소수를 기재</p> <p>(12) " 유통업소 점검결과 부패변질식품 판매업소수를 기재</p> <p>(13) 당월의 유통업소 점검결과 냉장식품을 비냉장 보관하고 있는 업소수를 기재</p> <p>(14) 당월의 유통업소 점검결과 표시기준 위반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업소수를 기재</p> <p>(15) 당월의 유통업소 점검결과 부적합 제품을 진열·판매하고 있는 업소수를 기재</p> <p>(16) 점검결과 기타 유통관리가 부적합한 업소수를 기재</p> <p>(17) 당월의 위반업소중 고발된 업소수를 기재</p> <p>(18) " 위반업소중 시정지시한 업소수를 기재</p> <p>(19) " 유통업소 폐기건수를 기재</p> <p>(20) " 유통업소 폐기량을 기재</p> <p>(21) " 유통업소 폐기량에 대한 금액을 기재</p>
표 측	<p>(2)~(6) 지역별로 세분해서 기재</p>
표 두	<p>나. 위생교육 실태 및 위생분야 공무원 현황</p> <p>(1) 당월의 접객업소 교육대상자의 수(2+3)를 기재</p> <p>(2) " 교육대상 업주의 수를 기재</p>

- (3) 당월의接客업소 교육대상 종사자의 수를 기재
- (4) 당월에接客업소에 대하여 실시한 교육인원수(5+6)를 기재
- (5) 당월에 실시한接客업소 업주의 교육인원수를 기재
- (6) " " 종사자의 " "
- (7) 당월에 제조업소 교육대상자의 수(8+9)를 기재
- (8) 당월의 제조업소 교육대상 업주의 수를 기재
- (9) " " 위생관리인의 수를 기재
- (10) " " 종사자의 수를 기재
- (11) 당월에 실시한 제조업소의 교육인원수(12+13+14)를 기재
- (12) 당월에 실시한 제조업소의 업주 교육인원수 기재
- (13) " " 위생관리인의 수를 기재
- (14) " " 종사자의 수를 기재
- (15) 현재 위생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정원수를 기재  
(단, 괄호안에 식품위생분야만을 기재)
- (16) 현재 위생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수를 기재  
(단, 괄호안에는 식품위생분야만을 기재)
- (17) 위생감시원중 소지자의 수를 기재  
(단, 괄호안에는 식품위생분야만을 기재)

##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생활보호실적보고

19    년    분기

시행년월일 : 19    .    .    인

발    신 :                    인

### 1. 거택 및 시설보호

#### 가. 생계부조

거 택 보 호			시 설 보 호											
구 분	①대상	②실적(월평균)	구 분	계	영 아	육 아	모 자 보 호	부 녀 지 복	노 인	장애인	정 신 질환	결 핵	나수용	부랑아
가구수			③시설수											
가수 원수			④대상인원											
			⑤보호인원 (월평균)											

#### 나. 장제부조

거 택 보 호			시 설 보 호					
⑥ 계획구수 :	구		⑦ 사망자수 :	명	⑧ 계획구수 :	구	⑨ 사망자수 :	명

#### 다. 예 산

구 분	거 택 보 호						시 설 보 호					
	⑩ 배 정			⑪ 집 행			⑫ 배 정			⑬ 집 행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계												
생계비												
장의비												

2. 생업자금 용자							나. 운영실태									
가. 용자현황																
○ 대상별 (단위: 백만원)							(단위: 가구)									
구 분	계		⑭ 지역거주자		⑮ 지방이주자		구 분	⑳ 계	㉑ 성 공	㉒ 현 유 상 지	㉓ 부 운 실 영	㉔ 중 도 폐 지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소 계	사 업 패	질 병 및 고	기 타	
⑯ 당분기					⑰ ( ) ( )		계									
⑰ 누 계					( ) ( )		농·임·어업									
※ ( )내는 무보증 용자 실적임.							축 산 업									
○ 금액 및 종류별 (단위: 용자건수)							광 · 공 건 설 업									
구 분	계	300만원 이하	300만원 초과~ 400만원 이하	40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500만원 초과		상 업 (음식·숙 박업 포함)									
계																
⑱ 신규용자							서비스업 및 기타									
⑳ 추가용자																
○ 용 도 별 (단위: 용자건수)							※ 운영실태 현황에는 기 용자받은 자중 당해연도를 제외한 최근 3년동안 용자받은 자에 대한 실태파악 결과 기재									
㉕ 계	㉖ 농·임·어업	㉗ 축산업	㉘ 광·공·건설업	㉙ 상업(음식·숙박업 포함)	㉚ 서비스업 및 기타											

승인번호: 제11708호, 승인일자: '76. 12. 7('92. 12. 28 변경승인)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08	보고종별	분기보	제 목	생활보호실적보고
보고기관	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
표 두	1. 거택보호 및 시설보호				
표 측	① 대상은 당부에서 내시 또는 시도에서 구시군(읍·면·동)에 배정한 가구수 및 가구원수 임. ② 실적은 분기중 주·부식비 등을 지급하여 실제보호한 총가구수 및 연인원수를 3으로 나눈 월평균 보호인원 및 가구수를 기입함. ③ 시설수는 시설종별로 개소수를 기입하되 대상시설은 국고 보조 및 지방비 부담 사업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을 말함. (국·공립시설제외) ④ 대상인원은 당부에서 내시 또는 시도에서 구시군에 배정한 인원수를 기입함. ⑤ 보호실적은 분기중 주·부식비 등을 지급하여 실제보호한 연인원수를 3으로 나눈 월평균 보호인원수를 기입함.				
표 두	⑥ 계획구수는 당부에서 내시 또는 시도에서 구시군(읍·면·동)에 배정한 사망구수를 기입함. ⑦ 사망자수는 실체분기중 사망한 인원수를 기입함. ⑧, ⑨ 거택보호 작성요령과 동일함. ⑩ 배정은 당부에서(또는 시도에서 구시군에)분기별로 국고 보조 내시한 금액과 부담비율에 의한 지방비를 기입함. ⑪ 집행은 분기중 실제보호비용으로 지출한 금액을 기입함.				

표 두	<p>⑫, ⑬ 거택보호 작성요령과 동일함.</p> <p>2. 생업자금 용자</p> <p>⑭ 지역거주자란은 그 지역에 원래부터 거주하고 있던 생활보호대상자 용자를 받은 경우 기재</p> <p>⑮ 지방이주란은 서울, 부산등 대도시에서 전입한 생활보호 대상자가 용자를 받은 경우 기재</p>
표 측	<p>⑯ 당분기실적은 소정의 구비서류를 갖추어 용자기관에 제출하여 실제 용자를 받은 가구수를 기재</p> <p>⑰ 누계는 당해년도 1/4분기부터 당해분기까지의 총용자액을 기재</p> <p>⑱ 지방이주자 건수 및 금액란의 ( )는 지방이주자중 무보증으로 용자를 받은 건수 및 금액을 기재</p> <p>⑲-⑳ 란은 분기중 실제용자를 받은 가구수(⑯항목)를 용자 규모별로 신규용자와 추가용자로 구분하여 기재</p> <p>㉑-㉒ 란은 분기중 용자를 받은 가구의 용자금 사용용도를 구분하여 기입하되, ㉒항의 계와 ⑯항의 계는 일치하여야 함.</p> <p>㉓ 란은 완전히 자립하였다고 판단되는 가구수를 기재.</p> <p>㉔ 란은 자립한 단계는 아니나, 1~2년후에는 자립할 가능성이 많은 가구수를 기재.</p> <p>㉕ 란은 완전히 자립에 실패한 경우는 아니나, 실패할 가능성이 많은 가구수를 기재</p> <p>㉖ 란은 완전히 자립에 실패한 가구수를 실패의 원인별로 기재</p> <p>㉗ 란은 ㉓~㉖항의 총누계를 기입하되, 추가용자자(재용자)는 누계에 포함시키지 말고 기재.</p>

- 결핵관리 사업실적 보고
- 가족보건사업실적 보고
- 국제검역 상황

## 결핵관리 사업실적 보고서

분류기호 : ( )

수 신 :

참 조 :

( 19 . / 4 분기 )

시행년월일 : 19 . .

제 목 : 결핵관리 사업실적보고

발 신 : ①

### 1. 예방접종 실적 (단위 : 명)

실적	당 분 기		누 계
	보건소	병·의원	
미취학	1세미만		
	1~5세		
초 등 학 교	검 사 자 수		접 종 자 수
	당분기	누 계	당분기
	1학년		
	6학년		

### 3. 검사실적 (단위 : 건수)

실적	초회검사(등록전검사)		추구검사	
	당분기	누 계	당분기	누 계
객 담				
엑 스 선				

### 2. 환자발견 (단위 : 명)

발견방법	엑 스 선			수집객담 (가정방문)	당분기 합계	누 계
	보건소내소	건강진단	이동검진			
검진(사)자수						
객담검사	양 성					
	음 성					
	미 검					
요치료자수						
요관찰자수						
법 정 신 고 환 자	당 분 기				누 계	
	신환수	재발수	구환수	사망		

### 4. 신환자 및 결핵사망자 현황 (단위 : 명)

구분	신 환 등 록				결 핵 사 망			
	소계	양 성		음 성		소계	남	여
		남	여	남	여			
연령별								
계								
0~4세								
5~14세								
15~24세								
25~34세								
35~44세								
45~54세								
55~64세								
65세이상								

### 5. 등록환자동태 (단위 : 명)

요 인	전분기 말 현재 등록 환 자	증 가						감 소									분기말 등록 환 자	분기중 수약불 협조자		
		계	신환 ①	재발 ②	중단후 재등록 ③	전입 ④	기타 ⑤	관리 전환 ⑥	계	완치 ①	완료 (판별) ②	실패 ③	사망 ④	중단 ⑤	전출 ⑥	진단 변경 ⑦			기타 ⑧	관리 전환 ⑨
치 방																				
초 치 표	양 성	E(S)HRZ6																		
		E(S)HR9																		
		장 기																		
	음 성	E(S)HRZ6																		
		E(S)HR6																		
		장 기																		
재 치료																				
INH단독(난치)																				
요 관 찰																				

### 6. 약품현황

구 분	수 량	전분기말 재고량	당분기중 수배량	당분기중 사용량	당분기말 재고량
INH(100mg 정)					
EMB(400mg 정)					
RMP(150mg 캡슐)					
PZA(500mg 정)					
PAS(과립300mg)					
S-M(1g 병)					
K-M(1g 병)					

### 7. 기자재현황

구 분	수 량	전분기말 재고량	당분기중 수배량	당분기중 사용량	당분기말 재고량
간찰(롤)	70				
	3m				
	30.5m				
	100m				
직찰(매)	14"×14"				
객담통(개)					

### 8.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현황

유 료 환 자 수 (명)	징 수 액 (원)	
	당 분 기	누 계

승인번호 : 제11710호, 승인일자 : '80. 2. 26('93. 12. 29, '95. 2. 11 변경승인)

**여 백**

## 작 성 요 령

번호	11710	보고종별	분 기	제 목	결핵관리사업실적
기 관	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분기종료 10일	
<p>1. 항목별 작성요령</p> <p>(1) 예방접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금분기실적 보건소 : 보건소에서 접종한 해당월 실적</li> <li>· 금분기실적 병의원 : 병의원에서 보고된 해당월 실적</li> <li>· 검사수 금분기실적 : 해당월에 실시한 국민학교 1학년 비시지 반혼조사 및 6학년 투베르쿨린 반응검 사수</li> <li>· 접종수 금분기실적 : 국교1년-비시지 반혼없는 아동중 비시지 접종한 아동수 국교6년-투베르쿨린 반응이 음성인 아동중 비시지 접종한 아동수</li> <li>· 누계 : 매년 1월1일부터 해당월말까지 실시한 검사수 및 접종수</li> </ul> <p>(2) 환자발견</p> <p>결핵검진 접수 및 결과대상(서식6)의 기록에 따라 해당분기에 검진 받은 자의 수와 그중에서 요치료 또는 요관찰자로 판정받은 자의 수를 기록한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보건소 내소 : 건강검진이외의 목적으로 결핵검진을 받고자 내소한 자(타 의료기관에서 결핵 유소견자로 판명 받았으나 치료하지 않고 보건소에 다시 검진 받고자 내소하여 객담 및 엑스선 검진을 받은 자를 포함한다.)</li> <li>· 건 강 검 진 : 보건증, 건강진단서 발급 등을 위하여 보건소에서 결핵검진을 받은 자</li> </ul>					

- 증가(계) : 해당 분기중 아래 사유로 증가된 환자의 수
- 신환 : 과거에 결핵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자 또는 내소 당시 1개월 미만동안 치료를 하고 있으나 보건소 및 타 의료기관에 등록되지 않은자(타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또는 민간 병원에서 1개월 미만 치료받다가 보건소로 내소하더라도 전입으로 간주한다.)
- 재발 : 과거에 결핵치료를 받고 완치되었으나 객담검사에서 다시 균검출이 되거나 엑스선 검사 결과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받은 자
- 중단후 재등록 : 치료를 주어진 기간동안 완료하지 않고 2개월 이상 중단한 후에 다시 치료받고자 내소한 자
- 전입 : 타 보건소, 국립결핵병원, 민간 병원에서 치료받다가 전입해 오는 자(국립결핵병원이나 민간 병원에서 전입해 오는 환자는 보건소에서의 처방이 가능한 자만을 전입으로 받아들인다.)
- 기타 : 위 사유 이외로 등록된 환자. 가능한 위의 등록사유를 확실히 구분한다.
- 관리전환 : 등록기간중에 관리방법이 변경된 경우로 여기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이 있다.
  - 초치료(균음성) 또는 요관찰 → 초치료(균양성):  
균음성으로 등록치료중 또는 요관찰자로 등록중에 객담검사 결과가 양성으로 나와 균양성 처방으로 바뀌어야 하는 환자(초치료 양성환자의 “증가”의 관리 전환란에 들어갈 숫자는 초치료 음성 환자 중 배양에서 균이 나온 환자의 수와 요관찰자중 객담에서 균이 검출된 자의 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즉 균음성환자의 “감소”의 관리전환란의 수와 요관찰자중 균양성으로 관리전환된 자의 수의 합)

- 요관찰 → 초치료(균음성) : 요관찰자로 등록 관찰중 객담검사에  
서 균은 검출되지 않으나 엑스선상 활동성 폐결핵으로 판정되어  
치료를 요하는 자(초치료 음성환자의 “증가”의 관리전환란에 들  
어갈 숫자는 요관찰자중 균음성 폐결핵환자로 변경된 환자의 수  
와 일치해야 한다.)
- 초치료(균양성) → 재치료 : 초치료에 실패한 균양성 환자들중  
에서 재치료로 관리전환된 자(초치료에서 실패하여 재치료로 전환  
된 환자의 숫자만을 재치료 환자의 “증가”의 관리전환란에 기입  
한다. 초치료에 요관찰자중 균음성 폐결핵환자로 변경된 환자의  
수와 일치해야 한다.)
- 재치료 → INH 단독 : 재치료에 실패하여 INH 단독으로 전환되  
는자(재치료 환자중 실패하여 INH 단독으로 전환된 환자의 숫  
자만을 INH단독의 “증가”의 관리전환란에 기입한다. 재치료에서  
도 실패하였으나 타 의료기관으로 간 경우는 포함시키지 않는  
다.)
- 감소(계) : 해당 분기중 아래 사유로 감소된 환자의 수
- 완치 : 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받고 판정기준에 의해  
완치퇴록된 자
- 치료완료(판정불가) : 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는 완료  
했으나 판정불가로 퇴록된 자
- 실패 : 각 처방에 따른 치료기간동안 치료를 하였으나 판정기준에  
의해 실패로 퇴록된 자
- 사망 : 치료도중 사망한 자
- 중 단 : 치료도중 치료거부, 행방불명, 무단 전출등으로 2개월 이  
상 계속 수약하지 않아 퇴록된 자



- 전 출 : 환자의 개인 사정(이사, 전근)이나 병의 상태에 따라 타 보건소 또는 국립결핵병원이나 민간 병의원으로 치료처를 옮겨 퇴록된 자(환자나 가족의 요구나 기타 등의 사유에 의해 보건소에서 진료의뢰서나 소견서등의 진료기록을 환자나 타 치료기관에 보내준 경우만을 전출로 간주한다.)
- 진단변경 : 치료도중 결핵이외의 타질환으로 판정되어 퇴록한 자  
(배양에서 2회이상 비결핵항산성균이 검출되면 진단 변경으로 퇴록시키고 전문기관에 의뢰한다.)
- 기 타 : 위 사유 이외로 퇴록한 환자. 가능한 위의 퇴록 사유를 확실히 구분한다.
- 관리전환 : 증가의 관리전환에 대한 설명 참조
- 금분기말 현재 등록환자 = [전분기말 현재 등록환자 수 + 증가(계)] - 감소(계)
- 금분기중 수약 불협조자 : 금분기에 등록 치료받고 있는 환자중 수약에 정일로부터 1주일이상 수약이 지연된 환자 수

(6) 약품현황

분기중 결핵치료약제 수불현황

- 전분기말 재고량 : 전분기보 작성시 잔량
- 금분기중 수배량 : 금분기중 배정받은 양
- 금분기중 사용량 : 금분기중 사용한 양
- 금분기중 재고량 : (전분기재고량 + 금분기수배량) - 금분기사용량

(7) 기자재 현황

엑스선 필름 및 객담통의 수불현황

- 70미리(3미터) : 40명 촬영

- 70미리(30.5미터) : 400명 촬영
- 100미리(23미터) : 200명 촬영
- 직촬필림(14"×14") : 초회검사 및 추구검사 분으로 사용된 매수
- 객담통 : 객담수집용 수불현황
- \* 작성요령 : 약품현황 작성요령과 동일
- \* 전배 조치시에는 조치내용을 명확하게 기재·작성할 것

(8) 항결핵제 보급수수료 징수현황

단기치료 및 재치료 일반환자들로부터 징수한 보급수수료 현황

- 유 료 환 자 수 : 단기(유료)+재치료(유료)
- 금분기징수액 : 해당분기중 징수총액
- 누 계 액 : 매년 1월 1일부터 징수한 누계

# 가족보건사업

분류번호 :	<div style="float: right; text-align: center;"> <b>기 관</b>                  (전화 :             </div>										
수 신 :											
참 조 :											
제 목 :	가족보건사업실적보고					19 년 /4분기분					
구 분	1. 시설지정기관수	2. 가족계획등록(명)				3. 생활보호대상자생계보조(명)		4. 영구피임보급 현황			
		전분기말현재	당 분 기		당분기말현재	당 분	누 계	1) 정관(명)		1) 난관(명)	
			신	퇴				당 분	누 계	당 분	누 계
		규	록	기	계	기	계	기	계	기	계
시군구	(1)	(2)	(3)	(4)	(5)	(6)	(7)	(8)	(9)	(10)	(11)
계											

※ 재시술 실적은( )로 기재  
 승인번호 : 제11712호, 승인일자 : '76. 12. 30('92. 2. 1 변경승인)







## 가족보건사업

구분	12. 영 유 아													
	총계 (명)	디 · 피 · 티									폴			
		계 ①+② (명)	접종인원(명)			추가 ②	분기중 약품 사용량			분기말 재고량 ①+② (명)	계 ①+② (명)			
			기 초 ①				소계 (ml)	접종량 (ml)	자 연 소모량 (ml)		기 초 ①			
			1차	2차	3차						1차	2차	3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시군구	계													
	무료													
분기말 (1)	계													
	무료													
	계													
	무료													
	계													
	무료													
	계													
	무료													
연중누계 (2)	계													
	무료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12	보고종별	분 기 보	제 목	가족보건사업실적보고
보고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분기종료후 익월 10일	
표 두	<p>I. 가족보건사업실적보고(3-1)</p> <p>1. 시술지정기관수</p> <p style="padding-left: 20px;">(1) 가족계획 시술 병(의)원으로 지정된 수 기재</p> <p>2. 가족계획등록</p> <p style="padding-left: 20px;">(2) : 전분기말 현재 가족계획등록자 수 기재</p> <p style="padding-left: 20px;">(3) : 분기중 신규로 등록한 자의 수 기재</p> <p style="padding-left: 20px;">(4) : 분기중 전출 및 임신능력 상실(영구불임시술후 1년이상 경과자, 폐경등), 사망, 기타 이혼, 별거등으로 장기간 가족계획의 필요성이 없다고 인정된 자의 수 기재</p> <p style="padding-left: 20px;">(5) : (2)+(3)-(4)</p> <p>3. 생활보호대상자 생계보호</p> <p style="padding-left: 20px;">(6) (7) : 분기중 “2자녀 이하 생활보호대상자중 불임시술수용자로서 생계보조금을 지급받은 자” 수 및 누계 기재</p> <p>4. 영구피임보급현황</p> <p style="padding-left: 20px;">(8), (10) 당분기 : 분기중 정관, 난관 시술자 수를 각각 기재</p> <p style="padding-left: 20px;">(9), (11) 누 계 : 정관, 난관 시술자 누계를 각각 기재</p> <p>5. 일시피임보급현황</p> <p style="padding-left: 20px;">(12) (14) (17) (20) : 보급수수료 유·무 구분없이 분기중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월경조절술 실적을 각각 기재</p> <p style="padding-left: 20px;">(16) (19) : 보급수수료 유·무 구분없이 분기말 현재 콘돔, 먹는피임약 재고량 각각 기재</p> <p style="padding-left: 20px;">(13) (15) (18) (21) : 보급수수료 유·무 구분없이 분기말 현재 자궁내장치, 콘돔, 먹는 피임약, 월경조절술 실적 누계를 각각 기재</p>				

II. 가족보건사업 실적보고(3-2)

6. 임신(영유아)신고

- (1) 분기중 임부로 신고된 건수
- (2) 해당분기말 현재 임부로 신고된 누계건수
- (3) 분기중 영유아로 신고된 건수
- (4) 해당분기말 현재 영유아로 신고된 누계건수

7. 모자보건등록

- (5) 모자보건사업에 전분기까지 등록된 임부
- (6) 해당분기말로 분기된 임부
- (7) 임신중결로 해당분기에 퇴록한 임부
- (8) 해당분기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임부  
= 전분기말 현재 + 분기중 신규 - 분기중 퇴록
- (9) 모자보건사업에 전분기말까지 등록된 영유아
- (10)-(12) 해당분기에 새로 등록된 영유아
- (13) 전출, 사망, 연령초과등으로 해당분기중에 퇴록한 영유아
- (14) 해당분기말 현재 등록되어 있는 영유아  
= 전분기말 현재 + 당분기 신규 - 당분기 퇴록

8. 모자보건관리

- (15) 해당분기중 산전건강관리 건수
- (16) 해당분기말 현재 산전관리 누계건수
- (17) 해당분기중 산후건강관리 건수
- (18) 해당분기말 현재 산후관리 누계건수
- (19) 해당분기중 영유아 건강관리 건수
- (20) 해당분기말 현재 영유아 건강관리 누계건수

9.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 (21) 분기중 선천성 대사이상검사 의뢰건수
- (22) 해당분기말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의뢰 누계건수
- (23) 해당분기말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의뢰중 정상자수 누계
- (24) 해당분기말 현재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의뢰중 비정상자수 누계

10. 분만 개조

- (25) 분기중 관내 시설분만건수
- (26) 분기중 가정분만건수
- (27) 시설분만, 가정분만 합한 계
- (28) 해당분기말 현재 분만개조건수 누계

11. 모자보건교육

- (29) 분기중 모자보건교육 실시 횟수
  - (30) 분기중 모자보건교육 실시 대상인원
  - (31) 분기말 현재 모자보건교육 누계 실시 횟수
  - (32) 분기말 현재 모자보건교육 누계 실시 대상인원
- \* 교육 = 개인+단체교육

II. 가족보건사업실적보고(3-3)

12. 예방접종

- 예방접종실적은 접종내용별로 접종한 실인원수 기재
- 각항의 계 : ①+②항
- 보건소별로 각각 작성하고 (1)에 보건소 전체 총수를 기재하여 (2)에는 1월부터 합산한 연중 누계
- \* “계”란에는 무료와 유료를 합한 전체수를 기재하고 “무료”란에는 실질적인 무료접종실적을 기입한다.
- 분기중 사용량 : 분기중 사용한 약품량을 기입한다.
- 분기중 실제접종량+분기중 자연소모량=분기중 사용량(소계)
- 분기말 현재 재고량=전분기말 현재 재고량-분기중 사용량

# 기 관 명

(전화 :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계 목 : 국제검역상황

시행년월일 :  
 발 신 : (인)

19    년    분기

- 83 -

1. 입항선박 및 항공기										5. 세균 검사 (건수)											
구            분		① 선    박			② 항 공 기					구    분	계	채    변	해    수	하    수	음    료   수	어    패   류	변    기   및	공    중   변   소	기    타	검 사 건 수	
		척    수		톤    수																	
계																					
① 국 적 별	한    국    적																				
	외    국    적																				
② 지 역 별	오    염    지    역																				
	비오염지역																				
2. 입국인원										6. 수입식품 신고처리 (건수)											
구            분		해            항			항            공					계	서류검토	관능검사	이 화 학 적 검 사			검사의뢰					
계													소    계	자    체    검   사							
① 탑 승 인 원	선 원 (승 무 원)																				
	승    객																				
② 국 적 별	한    국    인																				
	외    국    인																				
③ 지 역 별	오    염    지    역																				
	비오염지역																				
3. 예방접종										7. 검역구역내 전염병 발생상황											
대상질병별	계	출 입 국 인			검역구역내주민					질 병 별	① 출 입 국 인		② 검역구역내주민								
		내국인	외국인								한 국 인	외 국 인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발 생	사 망			
계																					
콜 레 라																					
황 열																					
장 티 푸 스																					
4. 각종 수수료										8. 무전검역상황											
구            분		건            수			수수료(원)					구    분	계	한국선 (인)		외국선 (인)							
계																					
국제공인예방 접종증명서교부	신    규									무 전 검 역 선 박	(척)										
	재    접    종									무 전 검 역 인 원	(인)										
	재    교    부									무 전 검 역 위 생 감 사	(건)										
	확 인 날 인									9. 기타 방역조치											
소    계										검 역 구 역 소 독	회 연 면 적		km <sup>2</sup>								
무 전 검 역 위 생 검 사										선 박 소 독	척										
구 중 구 서 소 독 증 명 서										시 체 검 역	건										
구 중 구 서 소 독 면 제 증										비고											
기 타 증 명 서 발 급																					

승인번호 : 제11718호, 승인일자 : '81.12.3

**여 백**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18	보고종별	분기보	제목	국제검역상황
보고기관	국립검역소		보고기한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	
표두	<p>1. 입항선박 및 항공기</p> <p>(1) 입항한 선박을 척수와 톤수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p>(2) 착륙한 항공기의 수를 기입한다.</p>				
표측	<p>(1) 표두의 사항을 한국국적과 외국국적으로 구분하여 기입</p> <p>(2) 표두의 사항을 검역전염병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으로 구분 작성한다.</p>				
표두	<p>2. 입국인원</p> <p>입국총계를 해항, 공항별로 기입한다.</p>				
표측	<p>(1) 표두의 입항인원을 선원(승무원) 및 승객으로 구분 기입한다.</p> <p>(2) 표두의 입항인원을 국적별로 기입한다.</p> <p>(3) 표두의 입항인원을 검역전염병 오염지역과 비오염지역으로 구분 작성한다.</p>				
표두	<p>3. 예방접종</p> <p>예방접종 실적을 출입국인과 검역구역내 주민으로 구분 작성한다.</p>				
표측	<p>대상 질병별로 기입한다.</p>				
	<p>4. 각종 수수료</p> <p>검역소에서 시행하는 각종 증명발급, 종류별로 발급건수와 해당 수수료액을 기입한다.</p>				
	<p>5. 세관검사</p> <p>세관검사 종류별로 검사건수와 양성건수를 기입한다.</p>				
	<p>6. 수입식품 신고처리</p> <p>신고된 수입식품의 처리 종류별로 작성한다.</p>				
	<p>7. 검역구역내 전염병 발생현황</p>				

표 두	<p>(1) 출입국인에 대한 전염병 발생상황을 한국인과 외국인으로 구분하고 이를 다시 발생환자수와 사망자수로 구분 기입한다.</p> <p>(2) 출입국인외에 검역구역내 주민의 질병 발생상황을 기입한다.</p>
표 측	<p>콜레라등 검역전염병 종류별로 작성한다.</p> <p>8. 무전검역상황 무전검역 실시상황을 기입한다.</p> <p>9. 기타 방역조치 검역구역 소독실시, 실적등을 기입한다.</p>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현황
- 부녀지도사업 실적 보고



# 기 관 명

(전화번호 : )

분류기호 :

수 신 :

시행년월일 : 199 . . . .

참 조 :

발 신 : ①

제 목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현황 19 년 반기

## 1. 인력현황

1. 보건소				1) 정 원	현 원			
구 분	1) 정원	2) 현원			2) 계	3) 간호사	4)간호 조무사	5) 기 타
① 계			8) 간 호 직	⑧ 소 계				
1) 보건소장	② 의 무 직			⑨ 진 료 실				
	③ 보 건 직			⑩ 결 핵 관 리				
2) 의 사	④ 관 리 의 사			⑪ 모 자 보 건				
	⑤ 공중보건의			⑫ 가 족 계 획				
3) 치과 의사	⑥ 관 리 의 사			⑬ 나 관 리				
	⑦ 공중보건의			⑭ 기 타				
4) 약 사				9) 보 건 직				
5) 방 사 선 기 사				10) 행 정 직				
6) 임 상 병 리 사				11) 고 용 원 및 기 타				
7) 치 과 위 생 사								

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1) 정 원	2) 현 원
1) 보건지소	1) 의 사		
	2) 치 과 의 사		
	3) 진 료 보 조 원		간 호 사 :            간호조무사 :
	4) 치 과 위 생 사		
	5) 통 합 보 건 요 원		간 호 사 :            간호조무사 :
2) 보건진료소	1) 보 건 진 료 원		
	2) 마 을 건 강 원		

II. 진료활동현황

구 분	1) 보 건 소				2) 보 건 지 소		3) 보 건 진 료 소	
	외 래	누 계	입 원	누 계	외 래	누 계	외 래	누 계
1) 실 인 원								
2) 연 인 원								

\* 승인번호 : 제11719호, 승인일자 : '81. 12. 3('91. 4. 9, 95. 3. 6 변경승인)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19	보고종별	반기보	제 목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현황
보고기관	특별시, 직할시, 도		보고기한	반기말로부터 15일 이내	
표 두	1. 보건소				
표 측	<p>1) 정원 :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구분별 정원수</p> <p>2) 현원 : 구분별 자격별 현원수</p> <p>1) 보건소장 : 보건소장중 의사인 의무직과 일반 보건직으로 구분한다.</p> <p>2) 의 사 : 보건소장을 제외한 보건소에 근무하는 의사중 관리의사는 일반의, 특정의, 공중보건장학의를 전원포함하고 공중보건 의는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 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의사만을 말한다.</p> <p>3) 치과의사 : 보건소에 근무하는 치과의사중 관리의사는 일반치과의사와 공중보건장학치과의사를 포함하고, 공중보건치과의사는 농 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거 공중보건업무에 종사하는 공중보건치과의사만을 말한다.</p> <p>4) 약 사 : 약사면허소지자인 약무직을 말한다.</p> <p>5) 방사선기사 : 방사선기사 T.O의 현원중 ( )는 유자격자수를 기재한다.</p> <p>6) 임상병리사 : 임상병리사 T.O의 현원중( )는 유자격자수를 기재한다.</p> <p>7) 치과위생사 : 치과위생사 T.O의 현원중( )는 유자격자수를 기재한다.</p> <p>8) 간 호 직 : 각사업요원중 면허별, 자격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p> <p>9) 보 건 직 : 보건소에 근무하는 자중 사업요원 이외의 보건직 공무원을 말한다.[(1)~8), 10, 11]</p>				

	<p>10) 행정 직 : 일반행정직 공무원수를 말한다.</p> <p>11) 고용원 및 기타 ; 고용직, 임시잡급 및 수당직원등을 말한다.</p> <p>2.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p> <p>1) 보건지소</p> <p>①~② 보건지소의사 : 보건지소에 근무하는 의사에 대하여는 의사와 치과 의사(공중보건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p> <p>③ 진료보조원 : 보건지소장의 진료보조자로 간호사와 간호조무사로 구분한다.</p> <p>④ 치과위생사 : 치과 위생사 유자격자로 기재한다.</p> <p>⑤ 통합보건요원 : 통합보건요원은 간호사와 간호보조원으로 구분한다.</p> <p>2) 보건진료소</p> <p>① 보건진료원 : 보건진료원으로 위촉받아 보건진료소에 근무하는자를 말한다.</p> <p>② 마을건강원 :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14조에 의한 마을건강원수</p> <p>II. 진료활동현황</p> <p>1) 보건소 : 보건소 및 보건의료원에서 제공한 각종 활동사항만 기록한다.</p> <p>2) 보건지소 : 보건지소에서 제공한 각종 활동사항만 기록한다.</p> <p>3) 보건진료소 : 보건진료소에서 제공한 각종 활동사항만 기록한다.</p> <p>    - 외래 : 외래환자기록   - 입원 : 입원환자기록</p> <p>    - 누계 : 매년 1월 1일부터 보고서 작성 반기말까지 실적의 총환자기록</p> <p>표    측    1) 실인원 : 각 기관(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서 해당분기중 제공한 각종 서어비스(인원)수</p> <p>            2) 연인원 : 투약일수를 포함하여 기록(실인원&lt;연인원)</p>
--	--

기 관  
(전화 :

분류번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부녀지도사업 실적 보고

19 년

사업별     구 분	단 체 별 조 직								교 양 교 육	
	부 녀 회						여 성 단 체		회	인
	조 직			회 원 (명)			조	회		
	계	시 부	군 부	계	시 부	군 부			직	원
	1	2	3	4	5	6	7	8	9	10
당 분 기(1)										
누 계(2)										

승인번호 : 제11724호, 승인일자 : '81. 12. 3('92. 12. 28, '95. 2. 11, '96. 1. 19 변경승인)

명 )

시행년월일 : 19 . . . . .

발 신 : (인)

반 기

경제교육		어머니 컴퓨터교육		이웃돕기		부업지도 (집단부업)			저소득모자결연실적		
회	인	회	인	인	지	마	참	총	계	시 설 세 대 (세대)	일 반 세 대 (세대)
수	(명)	수	(명)	(명)	원 금 (천원)	을	여 가 구 (가구)	소 득 (천원)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제11724호	보고종별	반년보	제목	부녀지도사업 실적보고
보고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반기말부터 20일 이내	
표두	<p>(부녀지도사업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부녀회 시부·군부 수 합계를 기입한다.</li> <li>2. 부녀회 시부수를 기입한다.</li> <li>3. 부녀회 군부수를 기입한다.</li> <li>4. 1의 회원수를 기입한다.</li> <li>5. 2의 회원수를 기입한다.</li> <li>6. 3의 회원수를 기입한다.</li> <li>7. 부녀회를 제외한 여성단체수를 기입한다.</li> <li>8. 7의 회원수를 기입한다.</li> <li>9. 교양교육회수를 기입한다.</li> <li>10. 9에 참여한 교육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11. 경제교육회수를 기입한다.</li> <li>12. 11에 참여한 교육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13. 어머니컴퓨터 교육회수를 기입한다.</li> <li>14. 13에 참여한 교육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15. 이웃돕기에 참여한 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16. 이웃돕기 지원금액을 기입한다.</li> <li>17. 집단부업지도를 하고 있는 마을수를 기입한다.</li> <li>18. 집단부업지도에 참여한 가구수를 기입한다.</li> <li>19. 집단부업으로 얻은 소득총액을 기입한다.</li> <li>20. 시설세대, 모자세대, 결연실적을 기입한다.</li> <li>21. 시설세대 결연실적을 기입한다.</li> <li>22. 일반모자세대 결연실적을 기입한다.</li> </ol>				
표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반기 부녀지도사업 실적을 기입한다.</li> <li>2. 당해년도 부녀지도사업 실적 누계를 기입한다.</li> </ol>				

- 여성회관 운영상황 보고
- 구강보건사업현황
- 소년·소녀가장세대 현황 보고
- 아동상담 현황 보고
- 국내입양 현황 보고



#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수 신 :

시행년월일 : 19        .        .        .

참 조 :

발 신 :                    (인)

제 목 : 여성회관 운영상황보고

〈 19    년    년보 〉

1. 직업보도사업(기술교육)

〈 회관수(시·군·구 포함) :        개    회관 〉

과 목	총계	양재	미용	수예	편물	매듭, 공예	급식, 조리	타일, 도배, 도장	한복	요리	홈패션	표구	컴퓨터	기 타 I	기 타 II	기 타 III	
																	(1)
인 원																	
전년 말 현재 수	(1)																
입 소 자 수	(2)																
수 료 자 수	(3)																
탈 락 자 수	(4)																
년 말 현재 수 (1+2-3-4)	(5)																

2. 교양사업							
구	분	개최회수	인	원	과 목 및 내 용		
교	양	강	좌	(1)	(2)		
취	미	교	육	(3)	(4)		
작	품	등	발	표	회	(5)	
탁	아	사	업	(7)	실	인	원
				(8)	연	인	원
부	녀	상	담	(9)	(10)		
숙	소	이	용	(11)	실	인	원
				(12)	연	인	원
예	식	장	사	용	(13)	(14)	쌍
3. 운영개황 및 기타사업							

승인번호 : 제11725호, 승인일자 : '81.12.3('92.12.28, '95.2.11 변경승인)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25	보고종별	년 보	제 목	여성회관 운영상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년말로부터 20일 이내	
표 두	<p>(1) 여성회관에서 실시하는 직업보도 총인원수를 기입한다.</p> <p>(2) 직업보도과중 양재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3) 직업보도과중 미용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4) 직업보도과중 수예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미싱, 동양기계)</p> <p>(5) 직업보도과중 편물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6) 직업보도과중 매듭, 공예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7) 직업보도과중 급식, 조리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8) 직업보도과중 타일, 도배, 도장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9) 직업보도과중 한복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0) 직업보도과중 요리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1) 직업보도과중 홈패션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2) 직업보도과중 표구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3) 직업보도과중 컴퓨터과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4) 직업보도과중 기타 I 은 (1)-(13)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중 수료인원이 제일 많은 과의 과목을 기재한후 그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5) 직업보도과중 기타 II 는 (1)-(14)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중 수료인원이 제일 많은 과의 과목을 기재한후 그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6) 직업보도과중 기타 II 는 (1)-(15)에 들어가지 않는 과목 모두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표 측	<p>1. 직업보도 상황</p> <p>(1) 여성회관 직업보도생의 전년말 현재수를 기입한다.</p> <p>(2) 여성회관 직업보도생중 년중입소자수를 기입한다.</p> <p>(3) 여성회관 직업보도생중 수료자수를 기입한다.</p> <p>(4) 여성회관 직업보도생중 탈락자수를 기입한다.</p> <p>(5) 여성회관 직업보도생중 년말 현재수를 기입한다.</p> <p>(1)부터 (5)까지 작성에 있어 다음 공식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전년말 현재수 (1)+입소자수(2)-수료자수(3)-탈락자수(4)=년말현재수(5)</p> <p>2. 교양사업</p> <p>(1) (2)여성회관에서 년중 교양강좌를 개최한 회수와 참석인원수를 기입한다.</p> <p>(3) (4)년중 취미교육을 실시한 회수와 참석인원수를 기입한다.</p> <p>(5) (6)년중 실시한 작품중 발표회의 개최회수와 참석인원수를 기입한다.</p> <p>(7) (8)여성회관 부설의 탁아소에 입소된 아동수와 매일 이용자수를 누계하여 기입한다.</p> <p>(9) (10)여성회관에서 부녀상담한 상담회수와 응한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1) (12)년중 숙소를 이용한 실인원수와 숙박연인원수를 기입한다.</p> <p>(13) (14)여성회관의 예식장을 사용한 회수와 몇쌍이 결혼했는가를 기입한다.</p> <p>3. 운영개황 및 기타사업 : 사업전개에 따른 운영개황을 설명하고 특수사업에 대한 상세한 실적을 기입한다.</p> <p>4. 통계대상 : 해당 시·도내의 전 여성회관 취합</p>
--------	---

#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수 신 :

시행년월일 : 19 . . .

참 조 :

발 신 :                    원

제 목 : 구강보건사업현황

19    년    반기

	구 강 보건교육		불소용액 양치사업		치면세마		치 면 열구전색		발 치		보존치료		응급처치		기 타	
	회 수	인 원	학교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건 수	인 원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계																
도 (이동진료 차량)																
보 건 소																
보 건 지 소																

승인번호 : 제11726호, 승인일자 : '81.12.3.( '95.2.11 변경승인)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26	보고종별	반 기	제 목	구강보건사업현황
보고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반기말로부터 15일 이내
표 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구강보건교육(집단, 개별, 그룹)을 실시한 횟수를 기재한다.</li> <li>2. 교육에 참가한 인원수를 기재한다.</li> <li>3. 시·군단위 초등학교학생을 대상으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는 학교를 기재한다.( *년초에 약품 배정한 공문을 참고하기 바람.)</li> <li>4.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한 학생수를 기재한다.</li> <li>5. 치면세마(스케일링) 건수(치아수)를 기재한다.</li> <li>6. 치면세마(스케일링) 실시한 인원수를 기재한다.</li> <li>7. 치면열구 전색한 건수(치아수)를 기재한다.</li> <li>8. 치면열구 전색한 인원수를 기재한다.</li> <li>9. 발치한 건수(치아수)를 기재한다.</li> <li>10. 발치한 인원수를 기재한다.</li> <li>11. 보존치료를 한 건수(치아수)를 기재한다.</li> <li>12. 보존치료를 한 인원수를 기재한다.</li> <li>13. 구강내 응급처치를 한 건수를 기재한다.</li> <li>14. 구강내 응급처치를 한 인원수를 기재한다.</li> <li>15. 16.(1)－(14)항에 속하지 아니한 기타의 건수 및 인원수를 기재한다.</li> </ol>				
표 측	구강보건실시 기관별로 구분 구입한다.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28	보고종별	분 기 보	제 목	소년소녀가장세대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분기말 익월 15일		
표 두	<p>1. 성 및 연령별 현황</p> <p style="margin-left: 20px;">○표상의 단계별 연령은 만 나이를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예” 12~14세는 만 12세부터 만 14세까지를 말한다.</p> <p style="margin-left: 20px;">○만 나이 계산은 분기보로 인한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 년 단위로 계산한다.</p> <p style="margin-left: 40px;">“예” 1970.6.5생일 경우 1988년에 보고할 경우 1988~1970=18 즉 18세가 된다.</p> <p>2. 재학현황</p> <p style="margin-left: 20px;">○미취학자 : 초등학교 입학전의 아동</p> <p style="margin-left: 20px;">○미재학자 : 학교진학을 하지 않고 취업등을 하는 자</p> <p>3. 주거형태현황</p> <p style="margin-left: 20px;">○주거형태를 표상에 기재된 것 중에 하나를 적용</p> <p>4. 발생유형현황</p> <p style="margin-left: 20px;">○소년·소녀가장 발생 유형을 표상에 기재된 것 중에 하나를 적용</p> <p>5. 취업현황</p> <p style="margin-left: 20px;">○취업현황을 재학중인 자의 취업(아르바이트)과 학교를 다니지 않으면서 취업한 자로 크게 나누고 표상의 종류별로 적용</p> <p style="margin-left: 20px;">○재학자 계 “란”의 수는 2번 재학현황의 초등재~대재 수와 일치한다.</p>				



<p>표 두</p>	<p>6. 생활보호 및 결연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소년소녀가장세대의 생활보호현황을 표상의 구분에 의하여 매분기말 현재수를 기재한다.</li> <li>○ 한국어린이재단을 통한 결연실적 및 시·군·구등 행정기관 자체적으로 추진중인 결연실적을 종합하여 표상의 구분에 따라 분기말 현재 실적을 기재한다.</li> </ul>
<p>작성시 유의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번 세대주+세대원의 합계 수는 2번, 5번의 총계수와 일치한다.</li> <li>○ 1번 세대주 계의 수는 3번, 4번 계의 수와 일치한다.</li> <li>○ 6번 결연현황란의 결연세대수 및 결연아동 수는 1번 세대주 및 세대원 합계수보다 클수 없음.</li> </ul>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29	보고종별	분 기 보	제 목	아동상담 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분기말 익월 15일		
표 두	<input type="checkbox"/> 시·군·구 단위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상담소 상담자의 상담현황 보고  1. 상담대상아동 발생유형 및 배경 가. 계 : 당분기말까지 발생하는 상담대상아동의 총수(누계)를 기입한다. - ① = ② + ③ = ④ + ..... + ⑨ = ⑩ + ..... + ⑭ 나. 상담대상아동 - ④ ~ ⑨ 상담대상아동의 발생유형을 구분 기입한다. - ⑩ ~ ⑭ 상담대상아동의 발생배경(가정형태별)을 구분기입한다.  2. 상담내용별 조치결과 가. 계 : 당분기말까지 발생하는 상담대상아동의 총수(누계)를 기입한다. - ① = ② + ..... + ⑨ = ⑩ + ..... + ⑭ 나. 상담내용 - ② ~ ⑨ 상담아동의 주요상담내용을 구분 기입한다. 다. 상담조치결과 - ⑩ ~ ⑭ 상담아동의 조치결과를 구분 기입한다.  ※ 아동복지지도원의 상담실적이란 상담소와 마찬가지로 상담 기록의 유지, 관리되는 케이스만 통계에 포함시킬 것				
기 타	* 1항의 ① = 2항의 ②				

#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국내입양 현황보고

시행년월일 : . . .

발 신 : (인)

(19    년    /4분기)

## 1. 입양기관별 입양신청자수 및 입양아동유형 (단위 : 가정수/아동수)

구 분	입양신청자수	입 양 아 동 유 형					
		계	사 생 아	시설아동	영세가정	결손가정	기 타
계							
○ ○ ○							
○ ○ ○							

## 2. 입양아동의 건강상태·성 및 연령별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성		연 령			
		남	여	3월 미만	3월~1세미만	1세~3세미만	3세 이상
계							
정 상							
장 애							

## 3. 양부모의 소득별 친자유무 및 직업현황 (단위 :명)

구 분	계	친 자 유 무		직 업					
		친자유	친자무	자영업 (농· 상업)	회사원	공무원 (교사 군인등)	사 회 사 업 종사자	의·약사 판·검사	기 타
계									
150 만 원 미만									
150 ~ 250 만 원									
250 만 원 이상									

승인번호 : 제11731호, 승인일자 : '89.3.28 ('93.12.29 변경승인)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31	보고종별	분기보	제목	국내입양 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분기말 익월 15일	
표두	<input type="checkbox"/> 공립아동상담소 및 입양알선(지정)기관의 국내입양 현황 보고  1. 입양기관 및 입양아동 유형별 현황 가. (계)=(입양기관별 신청자수)+(입양아동 유형별 가정수)를 기입한다.  2. 입양아동 연령·성별 및 상태별 가. 입양아동의 계에 해당하는 정상·장애상태를 구분 기입한다. 나. 입양아동의 계에 해당하는 성별을 구분 기입한다. 다. 입양아동의 계(남+여)에 해당하는 연령별 아동을 구분 기입한다.  3. 양부모의 입양동기·직업 및 소득별 가. 입양신청시 양부모의 친자 유·무 상태에 따라 구분 기입한다. 나. 입양신청시 양부모의 직업에 따라 구분 기입한다. 다. 입양신청시 양부모의 소득별 상태에 따라 구분 기입한다.  ※ 입양가정수(친자유+친자무)=양부모의 직업별 계				
기타	* 1항의 입양아동 유형별 (계)=2항의(계 : 남+여 또는 연령) =3항의(계 : 친자유류 또는 직업)				

- 요보호아동 현황 보고
- 장애인 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현황 보고
- 노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 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종사자 현황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34	보고종별	반 기 보	제 목	요보호아동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반기말 익월 20일	
표 두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반기중 발생한 전체 요보호아동수 및 상담아동 총수</li> <li>2) 반기중 발생한 건수중 귀가 및 연고자에 인도된 아동수 (1) - 2) = 3) = 8) = 11) &gt;</li> <li>3) 복지조치가 필요한 순수한 요보호아동의 수</li> <li>4) 순수한 기아의 수</li> <li>5) 미혼모의 사생아의 수</li> <li>6) 미아의 수</li> <li>7) 비행·가출·부랑아의 수</li> <li>8) 3) 요보호아동의 수 &lt;9) + 10) &gt;</li> <li>9) 3) 요보호아동의 수중 정상아의 수</li> <li>10) 3) 요보호아동의 수중 장애아동의 수</li> <li>11) 복지조치아동 총수 &lt;12) + 16) + 17) + 18) &gt;</li> <li>12) 아동복지시설 등에 입소 조치한 아동수 &lt;13) + 14) + 15) &gt;</li> <li>13) 아동복지시설에 입소 조치된 아동수</li> <li>14) 장애인 시설에 입소 조치된 아동수</li> <li>15) 미혼모 시설에 입소 조치된 아동수</li> <li>16) 소년소녀가장으로 책정된 아동의 수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중 아동수)</li> <li>17) 국내·외 입양아동의 수</li> <li>18) 일반가정으로 위탁(대리) 양육토록 조치된 아동의 수</li> </ol>				
표 측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매반기 말일 현재로 작성</li> <li>2) 연초부터 작성기준일 현재의 총 누계로 작성</li> </ol>				



# 기 관 명

(전화: )

문서번호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제 목 : 년도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의 설치현황 보고

발 신 :

(인)

## 1. 장애인편의시설 및 설비현황

편의시설 대상시설	계	턱 낮 추기	유 도 블럭	음 향 신 호 기	경 사 로	출 입 구	복 도	계 단	승 강 기	화 장 실	세 면 대	욕 실	샤 워 실	객 실 · 침 실	관 람 석 · 열 람 석	주 차 장	유 도 신 호 장 치	진 화 기	접 수 대 등	관 매 기	매 표 소	음 료 대	안 내 표 시	기 타					
																										24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1																												
횡 단 보 도	2																												
지 하 도 · 육 교	3																												
공 원	4																												
근 름 공 공 시 설	5																												
공 공 시 설 대 피 소 · 공 중 화 장 실	6																												

승인번호 : 제11735호, '95.6.9('96.10.11 변경승인)

편의시설		계	턱 낮추기	유도 블럭	음향 신호기	경사 로	출입 구	복도	계단	승강 기	화장 실	세면 대	욕실	샤워 실	객실· 침실	관람석· 열람석	주차 장	유도 신호장 치	전화 기	접수 대 등	판매 기	매표 소	음료 대	안내 표시	기 타	
																									24	
대상시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종 교 시 설	7		■	■	■			■	■	■	■	■	■	■	■	■	■	■	■	■	■	■	■	■		
노인·장애인 복 지 시 설	8		■	■	■			■	■	■	■	■	■	■	■	■	■	■	■	■	■	■	■	■		
노 유 자 시 설 (노인·장애인시설제외)	9		■	■	■			■	■	■	■	■	■	■	■	■	■	■	■	■	■	■	■	■		
의 료 시 설	10				■																					
교육 연구 시설	학 교, 도 서 관	11			■																					
	교육원·직업 훈련소·학원	12		■	■			■	■	■	■	■	■	■	■	■	■	■	■	■	■	■	■	■		
업무 시설	공 공 업 무 시 설	13			■																					
	일 반 업 무 시 설	14		■	■			■	■	■	■	■	■	■	■	■	■	■	■	■	■	■	■	■		
공 장 및 산 업 시 설	15		■	■	■			■	■	■	■	■	■	■	■	■	■	■	■	■	■	■	■	■		
숙 박 시 설	16		■	■	■			■	■	■	■	■	■	■	■	■	■	■	■	■	■	■	■	■		

편의시설		계	턱 낮추기	유도 블럭	음향 신호기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욕실	샤워실	객실·침실	관람석·열람석	주차장	유도 신호장치	전화기	접수대 등	판매기	매표소	음료대	안내표시	기 타		
																									24		
대상시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도·소 매점	3천㎡ 이상 면적	17	■		■								■	■	■	■											
	1천㎡ ~ 3천㎡	18	■		■			■	■				■	■	■	■											
관람집회시설		19	■		■								■	■	■	■											
전시시설		20	■		■			■	■				■	■	■	■											
방송국		21	■		■			■	■				■	■	■	■											
통신전화국		22	■		■			■	■				■	■	■	■											
통신시설		23	■		■			■	■				■	■	■	■											
공동주택		24	■		■			■	■				■	■	■	■											
기숙사· 공동숙소		25	■		■			■	■				■	■	■	■											



대상시설		편의시설																				기 타			
		계	턱낮추기	유도블럭	경사로	출입구	복도	계단	승강기	화장실	세면대	주차장	유도신호장치	전화기	접수대등	대표소	판대기발매기	음료대	안내표시	개찰구	추락방지난간	휠체어리프트	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교통시설	버스터미널	27																							
	철도역사	28																							
	도시철도역	29																							
	공항시설	30																							
	항만여객시설	31																							
	자동차정류장	32																							
	택시승강장	33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35	보고종별	년 보	제 목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현황
보고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p>〈일반적인 기재요령〉</p> <p style="text-align: center;">표 두</p> <p>〈교통시설을 제외한 시설(1쪽~4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조사표의 기재란중 윗칸은 실제 설치된 편의시설수(설치개소)를 기재하고 아랫칸은 설치되어야 할 편의시설 수(설치대상개소)를 기재할 것</li> <li>○ <u>설치대상개소 산정방법</u>은 다음의 항목별 산정요령에 의하되“권장사항”은 설치대상개소를 설치개소와 같게 산정할 것</li> <li>○ <u>설치개소 산정방법</u>은 다음의 항목별 설비기준을 만족하는 것만 산정하되 설비기준이 명시되지 않은 것은 설치되어 있으면 개소를 산정하여 기재할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장애인편의시설은 보건복지부령인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의 설비기준에 의거 설치 또는 설비되어야 하나 본조사에서 본 조사표에서 정한 최소한의 설비기준을 만족하는 것은 설치된 것으로 간주하여 조사함</li> </ul> </li> <li>○ 이하 “대상시설”은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건물 등의 시설을 말함</li> <li>○ 검은 부분은 조사하지 않은 항목임</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33까지의 편의시설개소 및 설치대상개소 수를 합계하여 기재할 것</li> <li>2. 턱낮추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횡단보도의 경우 양쪽에 턱낮추기 필요하므로 2개소로 산정</li> <li>② 승강장등에 턱낮추기 설치개소가 있으면 설치개소와 설치대상개소를 같게 산정</li> </ul> </li> <li>○ 설치기준 : 턱낮추기 시공 또는 연석경사로 설치</li> </ul> </li> <li>3 유도블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의 횡단지점, 지하도·육교의 출입구부근, 교통시설의 승강장(버스·택시승강장 제외)은 양쪽에 설치되어 있으므로 2개소로 산정</li> </ul> </li> </ul> </li> </ul>				

	<p>② 건물 주출입구에서 도로 또는 교통시설물(버스승강장등)까지의 연결 부분, 교통시설(지하철역사 등)내의 통로는 대상시설별로 1개로 산정</p> <p>③ 횡단도중 일시대기용 안전지대, 버스·택시 승강장, 장애인이용시설(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전화기·판매기 등) 전면에 설치개소가 있으면 설치개소와 설치대상개소를 같게 산정</p> <p>4. 음향신호기</p> <p>○신호기가 설치된 횡단보도당 2개소로 설치대상개소로 산정, 같은 요령으로 설치개소 산정</p> <p>5. 경사로</p> <p>○설치대상개소 산정</p> <p>①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에 단차가 있는 경우의 옥외 경사로를 건물당 1개로 대상개소 산정</p> <p>② 옥내경사로는 권장사항</p> <p>6. 출입구</p> <p>○설치대상개소 산정 : 건물주출입구 1개와 장애인용화장실 등 출입문이 있는 장애인용시설 1개소당 출입문 각 1개씩을 대상개소로 산정</p> <p>○설비기준 : 유효폭 0.9미터이상, 회전문을 제외한 형식의 문, 자동문은 개방시간 확보, 연속된 출입문사이의 유효거리 1.2미터 이상 확보</p> <p>7. 복도</p> <p>○설치대상개소 산정 : 건물의 한층을 1개소로 산정</p> <p>○설비기준 : 유효폭 1.2미터 이상 확보, 바닥의 단차 제거 장애인복지시설인 경우 복도 측면에 손잡이 설치</p> <p>8. 계단</p> <p>○설치대상개소 산정 : 장애인을 위한 별도의 수직이동수단(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 등)이 없을 경우가 대상이며 1건물당 1개로 설치대상개소 산정</p> <p>○설비기준 : 유효폭 1.2미터 이상 확보, 구부러진 형태의 계단인 경우 손잡이를 안쪽으로 연속해서 설치, 경사면의 손잡이 끝부분은 0.3미터 이상 연장, 손잡이 양 끝부분 및 연속하는 손잡이의 굴절부분에 층수·위치표시 점자표지판 설치, 계단코는 미끄럼 방지재로 마감</p>
--	---

9. 승강기

- 설치대상개소 산정 : 건물당 1개로 설치대상개소 산정.
- 설비기준 : 출구의 너비 0.9미터이상, 유효바닥면적 1.5×1.5미터이상 확보(유효바닥면적 미확보시 조작반을 휠체어 진행방향 측면에 설치하고 전면에 거울설치), 출입구 개폐 등 조작장치는 바닥면위 1.8~1.2미터 위치에 설치, 조작반·인터폰 등에 점자 표시판설치, 도착층을 알리는 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10. 화장실

- 설치대상개소 산정 : 건물(시설)당 2개소 (남녀별 1개소)를 설치대상개소로 산정
- 설비기준 : 대변기는 양변기로 하며, 출구의 너비 0.9미터이상, 대변기설치칸 바닥면적 1.0×1.8미터이상확보, 단 차제거, 대·소변기 옆에 수평 및 수직 손잡이 설치, 미끄럼방지 바닥재

11. 세면대

- 장애인용 세면대 설치는 권장사항임
- 설비기준 : 세면대 하단 높이는 65센티미터 정도, 세면대 하부에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조치, 좌우에 손잡이 설치, 유효바닥면적 확보, 냉·온수 등의 점자표시, 미끄럼방지 바닥재 설치 등

12. 욕실

- 장애인용 욕실 설치는 권장사항임
- 설비기준 : 욕조와 씻는 곳의 주위에 수평 및 수직 곤잡이 설치, 미끄럼방지바닥재, 냉·온수 등의 점자표시, 비상벨 설치, 샤워기 등은 앉은채로 손이 도달하는 지점에 설치 등

13. 샤워실

- 장애인용 샤워실 설치는 권장사항임
- 설비기준 : 샤워부스의 유효바닥면적 0.9×0.9미터 또는 0.75×1.5미터 이상 확보, 수평 또는 수직손잡이, 냉·온수 구분은 점자 표시설치, 의자 설치 등

14. 객실·침실

- 장애인용 객실·침실 설치는 권장사항임
- 설비기준 : 침대방설치, 휠체어 회전 공간확보, 단차제거, 청각장애인을 위한 초인등 설치, 시각장애인을 위해 촉감감지가 가능한 표지를 설치, 모든 조작장치는 쉽고 안전하게 사용가능하도록 설치 등



15. 관람석, 열람석

- 설치대상개소 산정 : ① 관람석500~1,000석이면 3석, 1,000~3,000석이면 5석, 3,000~10,000석이면 10석, 10,000석이상시 15석을 설치대상개수로 산정
- ② 공공도서관에 장애인용열람석 설치는 권장사항
- 설비기준 : 출입구 및 비상구나 통로에 근접한 위치, 유효바닥면적 0.9×1.3미터이상 확보

16. 장애인전용주차장

- 설치대상개소 산정 :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 설치비율에 따르되 관련조례가 없을 때에는 전체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3%를 설치대상개소로 산정(소수점 이하 단수는 1대로 계산)
- 설비기준 : 1대당 3.3×5미터 이상 면적 확보(평행주차형식인 경우 대당 길이 6.5미터 이상 확보), 건축물 주출입구나 경사로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

17. 유도신호장치

- 장애인용 유도신호장치의 설치는 권장사항임
- 설비종류 : 주출입구 위쪽에 점자 안내판, 촉지도식 안내판, 음향신호장치, 비상시 시각장애인용 경보 설비, 청각장애인을 위한 비상시 통로 유도장치 등

18. 전화기

- 설치대상개소 산정 : 설치개수와 같게 산정
- 설비기준 : 진입로의 단차제거 전화대 밑으로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공간확보, 동전투입구·전화다이얼 및 누름버튼의 높이는 0.9~1.5미터 이내 설치, 휠체어 진입가능 바닥면적 확보

19. 접수대나 작업대

- 장애인용 접수대·작업대 설치는 권장사항
- 설비기준 : 민원창구 등의 접수대나 작업대 밑으로 휠체어가 들어가도록 공간 확보, 작업대의 높이 0.7~0.9미터, 전면에 휠체어 진입가능 바닥면적 확보

20. 판매기

- 설치대상개소 산정 :
  - (1) 공원 및 교통시설은 대상시설 1개소당 1개로 설치대상개소 산정
  - (2) 그외 대상시설은 설치대상개소를 설치개소와 같게 산정
- 설비기준 : 동전투입구, 조작버튼 및 출구의 높이는 0.4~1.2미터 이내 장치,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바닥면적 확보, 교통시설의 발매기는 조작버튼에 요금 등을 점자 표시

<p>&lt;교통시설&gt;</p>	<p>21. 매표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원 및 교통시설은 대상시설 1개소당 1개로 설치대상개소 산정</li> <li>② 그외 대상시설은 설치대상개수를 설치개수와 같게 산정</li> </ul> </li> <li>○ 설비기준 : 매표소의 높이는 1.1미터 이하, 전면에 휠체어 회전이 가능한 바닥면적 확보</li> </ul> <p>22. 음료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공원 및 교통시설은 대상시설 1개소 당 1개로 설치대상개소 산정</li> <li>② 그외 대상시설은 설치대상개수를 설치개수와 같게 산정</li> </ul> </li> <li>○ 설비기준 : 음료분출구의 높이 0.7~0.8미터 정도, 전면에 유효바닥면적 확보</li> </ul> <p>23. 안내표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 장애인을 위한 시설이 설치된 곳 모두를 안내 표지 설치대상개소로 산정</li> <li>○ 설비기준 : 『장애인편의시설및설비의설치기준』이나 도로표지규칙에 의한 안내표지</li> </ul> <p>24. 기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의 명칭을 항목란에 기입하고 시설수를 기입하되, 설치개수와 설치대상개수를 동일하게 기입</p>
	<p>1~18항까지는 일반시설과 동일한 요령으로 기재</p>
	<p>19. 개찰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산정 : 동일승강장 접근 개찰구 중 1개소를 설치 대상개소로 산정(예:지하철역의 경우 1역 당 왕복 2개소가 설치 대상개소)</li> <li>○ 설비기준 : 유효폭 90센티미터 이상 확보</li> </ul>
	<p>20. 추락방지난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산정 : 추락위험이 있는 승강장의 경우 2개소로(양 끝) 설치대상개소 산정</li> <li>○ 설비기준 : 승강장 양끝부분에 바닥면으로부터 1.1미터에서 1.5미터 정도 높이</li> </ul>
	<p>21. 휠체어리프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치대상개소 산정 : 외부에서 승강장까지 승강기 또는 장애인용 에스컬레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교통시설인 경우 1승강장당 1개를 설치대상개소로 산정</li> </ul>

<p style="text-align: center;">표 측 (대상시설)</p>	<p>22. 기타 장애인의 편의를 위하여 설치된 시설의 명칭을 항목란에 기입하고 시설수를 기입하되 설치개소와 설치대상개소를 동일하게 기입</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2~24까지의 편의시설 개소수 합계를 기입</li> <li>4. 공원 : 자연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자연공원(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과 도시공원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공원</li> <li>5. 근린공공시설 : 읍·면·동사무소, 경찰관서, 우체국, 보건(지)소, 공공도서관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시설</li> <li>6. 대피소·공중화장실 : 대피소 및 5개 이상의 대변기가 설치된 공중화장실</li> <li>7. 종교시설 : 교회, 성당, 사찰, 기도원으로서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종교시설</li> <li>9. 노유자시설 : 아동복지시설, 유치원, 새마을유치원, 경로당, 기타 사회복지시설(노인·장애인복지시설은 별도란이 있으므로 제외)</li> <li>10. 의료시설 :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 전문병원, 마약진료소 기타 이와 유사한 것</li> <li>11. 학교, 도서관 : 각급학교, 도서관(근린생활시설인 독서실 제외), 장애인특수학교</li> <li>12. 교육원, 직업훈련소, 학원 : 연수원은 포함하며, 자동차학원 및 무도학원과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예능계·기술계학원은 제외</li> <li>13. 공공업무시설 : 국가 또는 지자체의 청사로서 당해연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14. 일반업무시설 : 금융기관, 신문사, 사무소, 오피스텔로서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것</li> <li>15. 공장 및 산업시설 :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령에 의한 장애인고용의무 사업체 (300인 이상 고용사업체)</li> <li>16. 숙박시설 : 호텔, 관광호텔, 국민호텔, 해상관광호텔, 한국전통호텔, 휴양콘도미니엄, 가족호텔</li> <li>19. 관람집회시설 : 500석 이상의 관람석을 설치한 극장, 영화관, 연예장, 음악당, 서어커스장과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회의장, 공회장, 예식장 및 운동경기관람장, 경마장, 자동차경주장(운동시설에 해당하는 것 제외)</li> </ol>
---	---

	<p>20. 전시시설 : 당해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박물관, 미술관, 과학관, 기념관, 산업전시장, 박람회장, 동·식물원, 수족관</p> <p>21. 방송국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이상인 방송국</p> <p>22. 전신전화국 : 당해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이상인 전신전화국</p> <p>23. 통신시설 : 노상에 설치된 공중전화기</p> <p>24. 공동주택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p> <p>27. 버스터미널 : 여객자동차터미널 및 화물터미널</p> <p>30. 공항시설 :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시설에 한함</p> <p>31. 항만여객시설 : 항만법 제3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항에 설치된 항만 및 종합여객시설</p>
--	---

# 기 관 명

(전화 :                    )

분류기호 :

수 신 :

시행년월일 : 19 . .

참 조 :

발신 :                    인

제 목 : 노인복지시설수용자 및 종사자현황    19    년    분기

## 가. 시설종사자 현황

(단위 : 명)

구 분	시설수	종 사 자														해당시설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계	시 설 장	총 무	생 활 지 도 원	생 활 보 조 원	의 사	간 호 사	간 호 조 무 사	사 무 원	영 양 사	취 사 부	세 탁 부	물 리 치 료 사	경 비 원	운 전 원	기 타	계	1급	2급	3급
시설종별																					
노 인 복 지	계																				
	양로시설																				
	요양시설																				
	전문요양시설																				
	실비양로시설																				
	실비요양시설																				
	유료양로시설																				
	유료요양시설																				
	유료노인복지주택																				

승인번호: 제11736호, 승인일자: '96.10.16

나. 시설 및 수용자 현황

(단위 : 명)

시설 구분	설 립 구 분	시설명	전기말현재재원수			분기중 입 소	분기중 퇴 소	정 원	기말현재재원수			
			계						계			
			계	남	여				계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합		계										
무료 양로	소 계											
무료 요양	소 계											
전문 요양	소 계											
실비 양로	소 계											
실비 요양	소 계											
유료 양로	소 계											
유료 요양	소 계											
유료 주택	소 계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36	보고종별	분기보	제목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및 수용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분기말로부터 20일 이내	
표두	<p>가. 종사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수 및 종사자 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 해당시설의 종사자수를 구분하여 기재하고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2급, 3급)소지자 구분 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li> </ul>				
표측	<p>나. 시설수용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② 설립구분별로 국·공립은 “국립”으로, 민간 비영리법인은 “법인”으로 기입한다.</li> <li>③ 시설명칭을 기입한다.</li> <li>④-⑥ 지난번 분기의 기말현재 재원수를 총수 남·여별로 구분 기입한다.</li> <li>⑦ 분기중 입소자 총수를 기입한다.</li> <li>⑧ 분기중 퇴소자 총수를 기입한다.</li> <li>⑨ 해당시설의 정원수를 기입한다.</li> <li>⑩-⑫ 분기말 현재 수를 총수 남·여별로 기입한다.</li> <li>⑬ 시설총수를 기입한다.</li> </ul>				

# 기 관 명

(전화 :            /전송 :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보고(19    년    /4분기)

시행년월일 : 19    .    .

발 신 :            (인)

## 1.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현황

시설구분		분기구분			분 기 중													현 분 기 말 누 계											
		전분기말누계			입 소						퇴 소							성 별			연 령 별			상 애 종 별					
		시 설 종 별	시설명	계	남	여	의 료 유 형			무 료 여 부			소 계	연 인 고 차 도	취 업	전 원	사 망	기 타	계	남	여	18세 미만		18세 이상		지 체	시 각	청 각 언 어	정 신 지 체
소 계	위 탁 자						무 고 연 자	기 타	무 료	실 비	남	여										남	여	체	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합 계	( 개소)																												
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소계( 개소)																												
시각장애인 재활시설	소계( 개소)																												
청각언어장애인 재활시설	소계( 개소)																												
정신지체장애인 재활시설	소계( 개소)																												
중증장애인 요양시설	소계( 개소)																												
장애인 근로시설	소계( 개소)																												

승인번호: 제11737호, 승인일자 '96.10.16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37	보고종별	분기	제목	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고기한	분기말로로부터 20일 이내	
표 두	<p>장애인복지시설 수용자 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의한 장애종별로 작성·기입한다.</li> <li>② 장애인복지법 제37조에 의한 시설종류별로 작성·기입한다.</li> <li>③~⑤ 지난 분기의 기말 현재를 남·여별로 구분 작성 기입한다.</li> <li>⑥ 분기중에 입소의뢰한 자의 총수를 산정·기입한다.</li> <li>⑦ 분기중에 입소한 자 중 연고자가 위탁한 자 수를 기입한다.</li> <li>⑧ 분기중에 입소한 자 중 연고자가 없는 자 수를 기입한다.</li> <li>⑨ 분기중에 입소한 자 중 분류가 불가능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li> <li>⑩ 분기중에 입소한 자 중 무료 입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li> <li>⑪ 분기중에 입소한 자 중 실비를 부담하고 입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li> <li>⑫~⑰ 분기중 퇴소 인원을 연고자인도, 취업, 전원, 사망,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기입한다.</li> <li>⑱~⑳ 분기말 현재의 총수를 남·여별로 구분 작성·기입한다.</li> <li>㉑~㉔ 분기말 현재의 인원을 18세미만, 18세이상으로 구분하여 남·여별로 구분하여 작성·기입한다.</li> <li>㉕~㉘ 분기말 현재의 총수를 주증상 기준으로 지체, 시간, 청각·언어, 정신지체, 중증요양,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기입한다.</li> </ol> <p>※ 주의 : 한 사람이 2종류의 이상의 중복장애를 가진 경우는 주요 장애 하나로만 분류한다.</p>				
표 두	<p>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수 및 종사자 인원수를 기입한다.</li> <li>○ 해당시설종사자중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2급, 3급)소지자 구분 인원수를 기입한다.</li> </ul> <p>1) 시설종사자 공통사항</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① 시설장 : 1인 ② 총무 : 1인 ③ 의사 또는 촉탁의사 : 1인이상(시간제 계약의사 포함) ④ 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 1인이상</li> <li>⑤ 보조원 : 입소자 50인당 1인이상 ⑥ 생활지도원 : 1인이상 ⑦ 영양사 : 1인이상(입소자 50인이상 시설에 한함) ⑧ 사무원 : 1인이상(입소자 100인이상 시설에 한함)</li> </ol>				

# 기 관 명

(전화 :                    )

분류기호 :

시행년월일 : 19 . . . . .

수 신 :

발 신 :                    (인)

참 조 :

제 목 :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종사자 현황(19 . . . /분기)

## 1.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현황

시설명	분기중 입소			분기중 퇴소				기 말 현 재																
	위탁자		무연 고자	연고자 인도	치유	전원	사망	기타	정원	현원	위탁여부			성 별				병 명 별						
	유료	무료									위탁자		남	여	정신 분열증	우울 증	간질	정신 지체	노인 성	약물 성	기타			
			유료	무료	고자	18세 미만	18세 이상	18세 미만	18세 이상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계																								

증인번호: 제11738호, 증인일자: '96.10.16

2.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현황

구 분 시설별	종 사 자															
	계	시설장	총 무	의 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보조원	경비원	취사부	세탁부	영양사	사무원	생활지도원	상담원	작업치료사	기타
정 원 (지 원)																
현 원																
비고(자격유무)																
시 설 명	계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38	보고종별	분기	제목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보고기한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	
표 측	<p>1.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수용자 현황</p> <p>(1) 시설명을 기입한다.</p> <p>(2)-(3) 분기중 입소환자중 연고자가 위탁한자 수를 기입한다.</p> <p>(4) 분기중 입소환자중 연고자가 없는자를 기입한다.</p> <p>(5)-(9) 분기중 최소인원을 연고자인도, 치유, 전원, 사망, 기타로 구분하여 작성 기입한다.</p> <p>(10) 분기말 현재의 총정원을 기입한다.</p> <p>(11) 분기말 현재의 재소자 총수를 기입한다.</p> <p>(12)-(14) 분기말 현재의 재소자중 위탁자(유료환자) 및 무연고자로 구분 기재한다.</p> <p>(15)-(18) 분기말 현재의 총수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작성하고 분기말 현재 재소자를 18세 이상인자와 18세 미만인자로 구분 작성한다.</p> <p>(19)-(25) 분기말 현재의 총수를 주증상을 기준으로 정신분열증, 우울증, 간질, 정신지체 및 노인성 약물등 기타로 구분 기입한다.</p> <p>※ 주의 : 한사람이 각종 질환을 동시에 가진 경우는 주요질환 하나만 기입한다.</p> <p>2.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종사자 현황</p> <p>○ 정원란에는 예산지원 종사자 수를 기입한다.</p> <p style="padding-left: 20px;">- 해당 종사자중 인건비를 자부담하는 인원수를 ( )란에 기입한다. (예 : 간호사 : 2(1) = 간호사 2명중 1명은 자부담임)</p> <p>○ 현원란에는 지원예산 인원수와 자부담하는 인원수를 합한 인원수를 기입한다.</p> <p>○ 비고란에는 해당시설 종사자중 자격소지 유무표시 (“예” : 사회복지사 1급 → 사1, 임상심리사 → 심, 촉탁의사에 의한 경우 → “촉” 표시)</p>				

- 부랑인시설 수용자동태 및  
종사자 현황
-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종사자 현황 보고
- 나병관리사업실적
- 성병관리사업실적



다. 수용자 연령별·건강상태별 현황

(단위: 명)

구 분	시설명	기말현재수용자			연 령 별						건 강 상 태 별									
		계	남	여	18세	18~	30~40	40~	50~	65세	정상	정신 지체	신체장애			결 핵	노쇠· 만성 질환	정신 질환	알콜 중독	기타
					미만	30미만	미만	50미만	65미만 이상	지 체			언어· 청각	시각						
시설 종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총 계																				
부 랑 인	소 계																			
부 랑 아 동	소 계																			



2. 부랑인시설 종사자 현황

(단위:명)

구 분	시 설 명	직 종 별															사 회 복 지 사 자 격 증 소 지 자				
		계	시 설 장	총 무	상 담 요 원	생 활 지 도 원	의 사 또는 추 의 사	간 호 사 또는 간 호 보조 사	보 조 원	영 양 사	직 업 훈 련 교 사	취 사 원	세 탁 원	사 무 원	경 비 원	운 전 원	기 타	계	1급	2급	3급
시 설 종 별																					
총 계																					
부 랑 인	소 계																				
부 랑 아 동	소 계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39	보고종별	분기보	제목	부랑인시설 수용자 동태 및 종사자 현황
보고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분기말로부터 15일 이내	
표 두	<p>1. 부랑인시설 수용자동태</p> <p>가. 부랑인 선도시설</p> <p>(2)-(4) 금분기중 발생인원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p>(5)-(7) 당해년도 금분기까지 총발생인원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p>(8) 발생한 자중 귀가 조치시킨 인원수를 기입한다..</p> <p>(9)-(11) 금분기 발생한 자중 연고자 인계가 곤란하여 시설에 입소시킨자의 수를 기입한다.</p> <p>이 경우 전문사회복지시설은 노인복지시설, 장애복지시설, 정신질환자 요양시설, 아동 및 부녀복지시설 등을 말한다.</p> <p>(12) 귀가조치, 시설수용 이외의 병원입원, 도망, 사망 등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3)-(17) 당해년도 금분기까지 총 선도한 인원수를 기입한다.</p>				
표 측	부랑인(18세 이상) 및 부랑아동(18세 미만)으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표 두	<p>나. 부랑인 수용현황</p> <p>(2) 공립·사회복지법인·재단법인 등으로 구분하여 기입하되 위탁한 경우에는 ( )에 위탁으로 표시한다.</p> <p>(3)-(5) 전기말 현재 수용인원을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p>(6)-(8) 분기중 입소된 인원수를 남·여별로 구분하여 기입한다.</p>				

	<p>(9)-(10) 분기중 입소된자중 행정기관(시·군·구청, 경찰)의 단속·선도에 의하여 입소의뢰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11) 분기중 타시설 및 병원으로 부터 전입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12) 분기중 행정기관 및 경찰관서 의뢰, 전입 이외의 사유로 입소된 자의 수를 기입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p> <p>(13)-(15) 분기중 퇴소한 인원수를 남·여별로 구분 기입한다.</p> <p>(16) 분기중 가족, 친척 등 연고자에게 인도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17) 분기중 타 시설이나 병원으로 전원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18) 분기중 자활·취업등으로 사회에 복귀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19) 분기중 퇴소를 희망하여 시설을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20) 분기중 도망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21) 분기중 사망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22) 분기중 입양 및 기타 사유로 퇴소한 자의 수를 기입한다.</p> <p>(23)-(25) 분기말 현재 수용인원 총수를 남·여별로 구분 기입한다.</p>
표	<p>측 부랑인(18세이상) 및 부랑아동(18세미만)으로 대별하고, 다시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표	<p>두 다. 수용자 연령별, 건강상태별 현황</p> <p>(2)-(4) 분기말현재 인원수를 기재하며, 부랑인시설 현황(나. 양식)의 (23)-(25)와 일치되어야 한다.</p> <p>(5)-(10) 분기말현재 수용인원을 연령별로 구분 기입한다.</p> <p>(11)-(20) 분기말 현재 수용인원을 건강상태별로 구분 기입한다.</p>
표	<p>측 부랑인(18세이상) 및 부랑아동(18세미만)으로 대별하고, 다시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표	두	<p>2. 부랑인시설 종사자 현황</p> <p>(2)-(17) 종사자 인원수를 기입한다.</p> <p>(18)-(21) 부랑인시설 종사자중 사회복지사 자격증(1급, 2급, 3급) 소지자의 인원수를 기입한다.</p>		
표	측	<p>○ 부랑인, 부랑아동시설종별로 대별하고, 다시 각 시설별로 구분하여 작성한다..</p> <p>○ 해당종사자중 인건비를 정부에서 지원받는 인원은 ( ) 내에 표시한다.</p> <p>(“예”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 style="text-align: center;">간 호 사</td> </tr> <tr> <td style="text-align: center;">2 (1)</td> </tr> </table> =간호사 2명중 1명은 지원인원임.)</p>	간 호 사	2 (1)
간 호 사				
2 (1)				

# 기 관 명

(전화: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종사자 현황보고

시행년월일 : 19 . . .

발 신 : (인)

( 년 반기)

## 1.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현황

구 분  종 별	전년도말현재(A)				입 소 누 계 (B)							퇴 소 누 계 (C)						기말현재(A+B+C)			결 연 아동수			
	시 설 수	아 동 수			계	기 아	미 혼 모 아	미 아	비 행· 가 출 부 랑 아	빈 곤 가 정 아 동	전 입	계	귀 가 및 연 고 자 인 도	취 업 자 립	위 탁 보 호	입 양	전 원 아 동 복 지 시 설	기 타 시 설	사 망 및 도 망	시 설 수		수용아동수		
		계	남	여																		계	남	여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계 ①																								
영아시설 ②																								
육아시설 ③																								
교호시설 ④																								
아동직업보도 시설 ⑤																								
자립지원시설 ⑥																								
아동일시보호 시설 ⑦																								

승인번호 : 제11740호, 승인일자 : '96.10.16



## 작성요령

승인번호	11740	보고종별	반기	제목	아동복지시설 수용아동 및 종사자현황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도		보고기한	반기말 익월 20일	
표 두	<p>1. 아동복지시설(누계로 작성)</p> <p>1)~4) 전년도말 현재의 시설수 및 수용아동수</p> <p style="padding-left: 20px;">○ 입소누계</p> <p>5) 아동복지시설에 입소한 아동수</p> <p>6)~8) 기·미아, 미혼모 아동의 수</p> <p>9) 비행청소년으로 법원에서 의뢰하였거나 비행을 할 우려가 있어 보호자가 시설에 입소 의뢰한 아동 및 가정의 결손·결함 등의 사유로 가출 또는 부랑아동수</p> <p>10) 생활보호대상자 등의 저소득층 가정의 아동으로 시설에 입소조치한 아동수</p> <p>11) 타 시·도 또는 다른 복지시설에서 전원되어 입소된 아동수</p> <p style="padding-left: 20px;">※ 주) 타 시·도 또는 다른 시설에서 동 서식에 의거 보고가 안된 경우는 기·미아 등 입소 유형별로 분류하고 이미 보고가 된 경우만 전입으로 분류</p> <p style="padding-left: 20px;">○ 퇴소누계</p> <p style="padding-left: 40px;">- 전 반기에 조치한 사항과 관계없이 당반기말 현재의 아동소재별로 작성</p> <p style="padding-left: 40px;">예) 상반기에 발생한 아동을 위탁보호 조치하였다가 하반기에 입양되었을 경우 하반기 보고시 위탁보호 인원은(감)하고 귀가조치 인원은 (증)해야 함.</p> <p>12) 퇴소아동수</p> <p>13) 부모 등 연고자에게 인도된 아동수</p> <p>14) 시설연장 아동 등이 취업 등 자립하여 퇴소하는 아동</p>				

표 두	<p>15) 아동복지법시행규칙 제5조에 의거 다른 수탁희망자에게 위탁보호되는 아동수</p> <p>※ 15) 조치후 입양된 경우는 차반기에 16)으로 변경 작성</p> <p>16) 국내·외 입양된 아동수</p> <p>※ 각 시·도의 총 국내입양 실적은 모두 동란에 포함되어야 함.</p> <p>17)~18)수용된 아동중 전원된 아동수</p> <p>19) 수용아동중 도망, 사망된 아동수</p> <p>※ 보호아동이 사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함.</p> <p>20)~23) 전기말 현재+입소인원-퇴소인원=기말현재 수용아동</p> <p>24) 21)기말현재 아동수 중에서 한국복지재단 또는 시·군·구 등 행정기관(시설자체)의 알선에 의해 1인이상의 후원자로부터 지원을 받고 있는 아동수</p>		
표 측	<p>1)~7) 아동복지시설 종류별로 구분하되 영·육아 종합시설의 경우 시설수는 1로 하고 수용아동은 대상시설별로 구분기재</p>		
표 두	<p>2. 시설종사자 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시설수 및 종사자 인원수를 기입</li> <li>○ 해당시설종사자중 사회복지사자격증(1급, 2급, 3급)소지자를 구분 인원수를 기입</li> </ul>		
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회복지시설 종류별로 구분하여 기입</li> <li>○ 해당 종사자중 인건비를 자부담하는 인원은 ( )속에 표시</li> </ul> <p>(“예” <table border="1" style="display: inline-table; vertical-align: middle;"> <tr> <td style="padding: 2px 10px;">영 양 사</td> </tr> <tr> <td style="padding: 2px 10px;">2(1)</td> </tr> </table> =영양사 2명중 1명은 자부담임)</p>	영 양 사	2(1)
영 양 사			
2(1)			



## 작 성 기 관 명

분류기호

시행년월일 : 19 . . . . .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발 신 : (인)

참 조 : 방역과장

제 목 : 나병관리사업실적

〈 19    년    분기〉

### 1. 관리환자현황

구 분	전기말 환자수	변 동		기 말 환자수	성 별		균동태				병 형				관 리 구 분		
		증	감		남	여	+	-	L	B	T	I	요 치료	요 관찰	요 보호		
									LL BL	BB	BT TT						
진료장소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총 계	①																
이 동 진료반	소 계	②															
	보건소진료	③															
	정착농원진료	④															
나기관	소 계	⑤															
외 래	1)나협지부	⑥															
	2)	⑦															
	3)	⑧															
	4)	⑨															
보 호	민 간	⑩															
	국 립 소 록 병 원	⑪															

### 2. 나관리사업실적

구 분	목 표	신 환 자 발 견					환 자 관 리				이 동 진 료 반 활 동	
		계	보건소 단독 시행	나기관시행	이동반	외래 진료	나 환 치 료		입 원 치 료		출 장 일 수	지 역 방 문 회 수
							투약치료	정밀검진	단기입원	수용보호		
구 분	1	2	3	4	5	6	7	8	9	10	11	
목 표	①											
실 적	②											
진 도 (%)	③											

### 3. 약품수급현황

구 분	전기말 재고	항 나 제				보 조 약 제			
		DDS		RMP150mg	B663 50mg	영양제	간장제		
		100mg	50mg						
구 분	1	2	3	4	5	6	7	8	9
전기말 재고	①								
수 입	②								
사 용 량	③								
기 말 재고	④								

승인번호 : 제111741호, 승인일자 : '96.10.16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41	보고종별	분기	제목	나병관리사업실적보고
보고기관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매분기말 익월 15일까지	
표 두	<input type="checkbox"/> 나병관리사업실적 자료의 표기는 표두와 표측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은 가감공식에 의하여 기입한다. 단, 가감공식의 분모는 각항의 표기부호이며 수치의 크기는 아니다. 1. 관리환자 현황 표두 : 1) $\frac{\text{전기말환자수}}{1} + \frac{\text{증가}}{2} - \frac{\text{감소}}{3} = \frac{\text{기말환자수}}{4}$				
표 측	$-\frac{\text{남}}{5} + \frac{\text{여}}{6} = \frac{\text{양성}}{7} + \frac{\text{음성}}{8} + \frac{\text{L}}{9} + \frac{\text{B}}{10} + \frac{\text{T}}{11} + \frac{\text{I}}{12} = \frac{\text{요치료}}{13} + \frac{\text{요관찰}}{14} + \frac{\text{요보호}}{5}$ <p>○증 가 : 단위 나관리기관에 신환, 전입, 재등록 등 이유로 신규로 관리하에 편입되어 중앙등록실에 증가보고를 필한 환자수</p> <p>○감 소 : 관리중이었던 환자가 사망, 전출, 이민 등 이유로 관리로부터 제외되어 중앙등록실에 감소보고를 필한 환자수</p> <p>○기말환자수 : 단위나관리기관에서 관리하고 있는 당분기 환자수이며, 환자의 거주지와 관계없이 환자의 진료관리기관의 관리환자수(보건소치료자, 정착농원치료자, 외래진료소치료자, 수용보호자)</p> <p>○성별, 균동태, 병형, 관리구분환자수는 각각 기말환자수와 같아야 한다.</p> 표측 : 1) $\frac{\text{총계}}{\text{①}} = \frac{\text{이동진료반소계}}{\text{②}} + \frac{\text{나진료기관소계}}{\text{③}}$ $: \frac{\text{이동진료반소계}}{\text{②}} = \frac{\text{보건소진료}}{\text{③}} + \frac{\text{정착농원진료}}{\text{④}}$ $: \frac{\text{나진료기관소계}}{\text{⑤}} = \frac{\text{기관 1)}}{\text{⑥}} + \frac{\text{기관 2)}}{\text{⑦}} + \frac{\text{기관 3)}}{\text{⑧}} \dots\dots$ <p>○나기관 1)~4)는 정부가 인정하는 나전문진료기관명을 기입한다.                  : 외래(단기입원 포함)                  나협연구원 및 시·도지부, 카톨릭만성병연구소, 애덕자매회, 천주교구라회, 이리성모의원, 여수애양재활병원, 카톨릭피부과의원, 구라선교회 예수의원, 다미안피부과의원, 파티마병원, 계명의대동산의료원</p>				

	<p>: 보호시설</p> <p>국립소록도병원, 성라자로원, 여수애양재활병원, 안동성좌원, 대구애락 보건병원, 산청성심인에병원, 영주다미안의 집</p> <p>○ ⑥-⑩란에는 외래, 보호, 진료기관별 관리환자수를 기입한다.</p>
<p>표 두</p>	<p>2. 나관리사업실적</p> <p>○ 목표실적은 연간누계를 기록한다.</p> <p>표두 : 1) <math>\frac{\text{신환자발견사업계}}{1} = \frac{\text{보건소단독시행}}{2} + \frac{\text{나기관시행검진계}}{3} = (\frac{\text{이동반검진}}{4} + \frac{\text{외래검진}}{5})</math></p> <p>2) 환자관리사업은 <math>\frac{\text{투약치료}}{6} : \frac{\text{정밀검진}}{7} : \frac{\text{단기입원}}{8} : \frac{\text{보호}}{9}</math> 의 독립자료로서 정리한다.</p> <p>3) 이동진료반활동은 <math>\frac{\text{출장일수}}{10} : \frac{\text{지역방문회수}}{11}</math> 의 2종의 독립자료로서 정리한다.</p> <p>○ 신환자발견사업 : 나환자 발견을 목적으로 시행된 일반인 검진수이다.</p> <p>○ 투약치료 : 월단위 항나제 투약환자수</p> <p>○ 정밀검진 : 정기적인 종합검진수</p> <p>○ 입원치료 : 입원치료환자의 입원일수 누계로 한다.(일일 입원단위)</p> <p>○ 지역방문회수 : 이동반의 출장중 방문한 고정진료소인 보건소, 정착농원 방문회수와 전체검진을 위한 부락 또는 학교 등을 방문한 회수</p>
<p>표 측</p>	<p>표측 : 1) <math>\frac{\text{실적}}{\text{②}} \div \frac{\text{목표량}}{\text{①}} \times 100 = \frac{\text{진도}}{\text{③}}</math></p>
<p>표 두 표 측</p>	<p>3. 약품수급현황</p> <p>※ 각 약제의 단위는 100정(캡셀)으로 한다.</p> <p>표두 : ○ 공란은 추가공급 약제명 및 기재정된 기타 약품명을 기입한다.</p> <p>표측 : <math>\frac{\text{진기말재고}}{\text{①}} + \frac{\text{수입}}{\text{②}} - \frac{\text{사용량}}{\text{③}} = \frac{\text{기말재고}}{\text{④}}</math></p> <p>○ 수입은 정부배정분을 뜻하되 자체수급분이 있을 경우는 적색( ) 내에 별도 기재하고 정부수급분과 합산한다.</p>

# 작 성 기 관 명

(전화번호 : )

분류기호 :

199 . . .

발 신 :

수 신 : 보건복지부장관

참 조 : 방역과장

제 목 : 성병관리사업실적

발신

인

## 1. 성병검진 및 치료실적 현황

구 분 대상및기관별		검 진						감염자 치료(감염자/치료자)							
		연간 검진 자수	혈청 검사	임균검사				기타 검사	계	매독	임 질		비임 균성 요도염	연성 하감	기타
				도말	배양	도말 + 배양	PP NG 검사				NON PPNG	PPNG			
등 록 관리자	소 계														
	보 건 소														
	대용성병진료소														
	기타의료기관														
소 계															
임 무															
교도소 수형자															
현 혈 자															

## 2. 성병 의료보호 실적 현황

구 분 진료 기관별		총진료자수			감 염 자 수												
		계	남	여	계			매 독		임 질		비임균성요도염		인성하감		기타	
					계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남	여
계																	
보 건 소																	
대용성병진료소																	
의료보호병 · 의 원																	

승인번호 : 제11742호, 승인일자 : '96. 10. 16

3. 약품현황

구 분 시 약 명		규 격	단 위	전년도 재고량	연중수배량		연 간 사용량	재고량
					국 고 지 원	지방비 확 보		
T. M 배 지 제조용 시 약	임균기초배지 (G.C Aagr base)	500g(Lb)	병					
	혈색소분말 (Hemoglobin Powder)	"	"					
	임균증균제 (Isovitalex enrichment)	10ml×5Amp	갑					
	임균억제제 (VCN inhibitor)	10ml×10Amp 5ml×5Amp	갑 갑					
	배양용기	20개/50분	상자					
P.P.N.G 검사시약		50disk	병					
매독혈청 검사시약	R.P.R	150test	킷					
	V.D.R.L	0.5ml/10Amp	갑					
	T.P.H.A	20Test	킷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11742	보고종별	년	제 목	성병관리사업실적
보고기관	특별시·광역시·도		보고기한	년말로부터 20일 이내	
표 두	<p>1. 성병검진 및 치료실적 현황</p> <p>성병등록 관리자와 일반관리 대상자(임부, 교도소 수형자, 헌혈자)의 질병별 검진 및 치료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검진란은 검사별로 연간의 검사건수를 기재한다.</li> <li>○ 감염자 치료란은 질병별로 감염자수와 치료자수를 한칸에 기재한다. (1인이 3일 치료를 받을시도 기재)</li> <li>○ 검진란중 임균검사의 도말은 도말검사만, 배양은 배양검사만, 도말+배양은 도말검사와 배양검사를 병행 실시한 검사건수를 기재하며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한다.</li> <li>○ 감염자 치료란중 임질란의 Non PPNG는 순수한 임질 감염자수를 기재하고, PPNG는 PPNG 검사결과 양성으로 판명된 수를 기재한다.</li> </ul>				
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등록관리자란은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754호) 및 성병관리사업지침에 의한 등록관리자의 보건소, 대용성병진료소, 기타의료기관에서의 검진건수를 기재한다.</li> <li>○ 일반관리 대상자란은 성병관리 사업지침에 의거한(임부, 교도소수용자, 헌혈자)에 대한 일반관리대상자 검진 건수를 기재한다.</li> </ul>				
표 두	<p>2. 성병 의료보호 실적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의료보호사업에 의한 성병진료 실적을 진료기관별로 구분하여 기재한다.</li> <li>○ 총진료자수는 의료보호에 의한 성병진료를 받은자를 질병별로 감염자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li> </ul>				

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감염자수는 의료보호에 의한 성병진료를 받은자를 질병별로 감염자수를 구분하여 기재한다.</li> <li>○ 진료기관별로 의료보호에 의한 성병진료 실적을 기재한다.</li> </ul>
표 두	<p>3. 약품 현황 및 연간약품의 사용 및 재고현황 파악</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규격 및 단위는 서식대로 기재한다.</li> <li>○ 연중 수배량중 지방비 확보는 도비나 시·군비로 확보한 수량을 기재한다.</li> <li>○ 연간 재고량은 전년도 재고량+연중수배량+연간사용량</li> <li>○ 전년도 재고량은 전년도 보고서의 연도말 재고량과 일치하여야 한다.</li> </ul>
표 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M 배지 제조용 시약, PPNG 검사시약, 매독혈청검사시약으로 구분하여 정확히 기재한다.</li> <li>※ 양식에 표시된 규격이외의 물품이 구입된 경우 동일물품 규격으로 환산 기재한다.</li> </ul>

- **공중위생관계 실태보고( / 분기)**



# 기 관

(전화 :  
(

분류기호 :  
수 신 :  
참 조 :  
제 목 : 공중위생관계 실태보고( / 분기)

## 가.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

구 분  업 종 별		업소수	감시 건수	위 반 내 용								
				위반 건수	영업시 간위반	퇴폐 영업	윤락 행위	위생 불량	시설 위반	미성년 출입		
				1	2	3	4	5	6	7	8	9
총 계		1										
숙 박 업	소 계	2										
	호텔	관광	3									
		일반	4									
	콘도미니엄		5									
	여관	갑	6									
		을	7									
	농원여관		8									
	여인숙		9									
목 욕 장 업	소 계	10										
	일반	공동탕	11									
		가족탕	12									
		한증탕	13									
	특수	사우나	14									
		증기탕	15									
복합탕		16										
이 용 업		17										
미 용 업		18										
유 기 장 업	소 계	19										
	컴퓨터게임장		20									
	종합유원시설		21									
	기 타 유 기 장		22									

승인번호 : 제11743호, 승인일자 : '97. 4. 11



나. 위생관련 영업 관리현황

구 분	업소수	감시건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고 발 건 수			
			위 반 건 수	위 생 불 량	시 설 위 반	기 타	계	폐 쇄 명 령	영 업 정 지	개 선 명 령	경 고	계	신 고 업 소	미 신 고 업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업종별															
소 계	1														
세탁업	2														
위생관리용역업	3														
위생처리업	4														

다. 위생용품제조업 관리현황

구 분	업소수	감시건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고 발 건 수			
			위반 건수	규격기준 위 반	검 사 미 필	관리인 미지정	기 타	계	폐 쇄 명 령	영 업 정 지	개 선 명 령	경 고	계	신고 업 소	미신고 업 소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업종별																
계	1															
세척제 제조업	2															
기타위생용품제조업	3															

라. 공중이용시설 관리현황

구 분		시설수	감시건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고 발 건 수					
				위 반 건 수	대상시설 미 신고	위생관리담당자 미 지 정	정밀검사 미 실시	기타	계	개 수 · 개선명령	시정명령	경 고	계	신 고 사 실	미신고 사 설		
																1	2
시설별																	
계	1																
사무용건축물	2																
복합건축물	3																
공연장	4																
학원	5																
도매시장 등	6																
지하상가	7																
결혼예식장	8																
실내체육시설	9																

마. 실내공기정화 청소 대상시설 관리현황

구 분  시설별	시설수	당해연도	당 분 기	감시건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고 발 건 수			
		청소대상 시설수	청소실시 시설수		위반건수	청 소 미 실시	기타	계	개 수 · 개선명령	시정명령	경 고	계	신 고 시 설	미신고 시 설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계	1														
사무용건축물	2														
복합건축물	3														
공 연 장	4														
학 원	5														
도매시장 등	6														
지 하 상 가	7														
결 혼 예 식 장	8														
실내체육시설	9														

바.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실내공기정화청소인정기관 관리

구 분	기관수	감시 건수	위 반 내 용						행 정 처 분 내 용					고 발 건 수			
			위반 건수	시 설 · 설비·인력 기준미달	폐업신고 미 이 행	무단휴업 ·재개업	영업정지 기 간 중 무단영업	기타	계	지정(인정) 최 소	영업 정지	개수·개선 명 령	경고	계	지정(인정) 기 관	미지정(미 인정)기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기관별																	
계	1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	2																
실내공기정화 청소 인정기관	3																

## 작 성 요 령

승인번호		보고종별	분 기 보	제 목	공중위생관계실태보고
보고기관	특별시, 광역시, 도		보 고 기 한		분기로부터 15일 이내
표 두	<p>가. 공중위생접객업소 관리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분기말 현재 업소수를 기재</li> <li>(2) 당분기의 감시 실시건수를 기재</li> <li>(3) 당분기 위반건수를 기재</li> <li>④ + ⑤ + ⑥ + ⑦ + ⑧ + ⑨ + ⑩ + ⑪을 기재</li> <li>(4)~(10) 사항별 위반건수 기재</li> <li>(11) (4)~(10)이외의 기타 위반건수를 기재</li> <li>(12) ⑬ + ⑭ + ⑮ + ⑯을 기재하고 (3)과 일치하여야 한다.</li> <li>(13) 행정처분 결과 허가취소 또는 영업장 폐쇄명령을 한 업소수를 기재</li> <li>(14) 행정처분 결과 영업정지한 업소수를 기재</li> <li>(15) 행정처분 결과 개선명령을 명한 업소수를 기재</li> <li>(16) 행정처분 결과 경고를 한 업소수를 기재</li> <li>(17) 당분기의 과징금 부과 건수 기재</li> <li>(18) 당분기의 과태료 부과 건수 기재</li> <li>(19) ⑳ + ㉑을 기재</li> <li>(20) 허가 또는 신고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li>(21) 무허가 또는 미신고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ol>				
표 두	<p>나. 위생관련 영업 관리현황</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분기말 현재 업소수를 기재</li> <li>(2) 당분기의 감시 실시건수를 기재</li> <li>(3) 당분기 위반건수를 기재, ④ + ⑤ + ⑥을 기재</li> <li>(4) 당분기 위생불량 건수 기재</li> <li>(5) 당분기 시설기준을 위반한 건수 기재</li> <li>(6) (4)(5)이외의 기타 위반건수를 기재</li> <li>(7) ⑧ + ⑨ + ⑩ + ⑪을 기재하고 (3)과 일치하여야 한다.</li> <li>(8) 행정처분결과 영업장 폐쇄명령을 한 업소수를 기재</li> <li>(9) 행정처분결과 영업정지한 업소수를 기재</li> <li>(10) 행정처분결과 개선명령을 명한 업소수를 기재</li> <li>(11) 행정처분결과 경고를 한 업소수를 기재</li> <li>(12) ⑬ + ⑭를 기재</li> <li>(13) 신고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li>(14) 미신고 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ol>				



<p>표 두</p>	<p>다. 위생용품제조업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분기말 현재 업소수를 기재</li> <li>(2) 당분기의 감시 실시건수를 기재</li> <li>(3) 당분기 위반건수를 기재, ④+⑤+⑥+⑦을 기재</li> <li>(4) 규격기준을 위반한 제품을 생산한 업소수를 기재</li> <li>(5) 제품의 자체검사 미필 업소수를 기재</li> <li>(6) 세척제제조업소의 위생관리인을 지정하지 않은 업소수를 기재</li> <li>(7) (4)(5)(6)이외의 기타 위반건수를 기재</li> <li>(8) ⑨+⑩+⑪+⑫를 기재하고 (3)과 일치하여야 한다.</li> <li>(9) 행정처분결과 영업장 폐쇄명령을 한 업소수를 기재</li> <li>(10) 행정처분 결과 영업정지한 업소수를 기재</li> <li>(11) 행정처분 결과 개선명령을 명한 업소를 기재</li> <li>(12) 행정처분 결과 경고를 한 업소수를 기재</li> <li>(13) ⑭+⑮를 기재</li> <li>(14) 신고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li>(15) 미신고업소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ul>
<p>표 두</p>	<p>라. 공중이용시설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분기말 시설수를 기재</li> <li>(2) 당분기의 감시 실시건수를 기재</li> <li>(3) 당분기 위반건수를 기재 ④+⑤+⑥+⑦을 기재</li> <li>(4)~(6) 사항별 위반건수를 기재</li> <li>(7) (1)~(6)이외의 기타 위반건수를 기재</li> <li>(8) ⑨+⑩+⑪을 기재하고 (3)과 일치하여야 한다.</li> <li>(12) ⑬+⑭를 기재</li> <li>(13) 신고시설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li>(14) 미신고시설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ul>

<p>표 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②+③+④+⑤+⑥+⑦+⑧+⑨를 기재</li> <li>(2)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li> <li>(3)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 건축물</li> <li>(4)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1천석이상의 공연장</li> <li>(5) 학원의 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li> <li>(6) 도·소매업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센터</li> <li>(7)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지하상가</li> <li>(8)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2천제곱미터이상의 결혼예식장</li> <li>(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체육시설로서 1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li> </ul>
<p>표 두</p>	<p>마. 실내공기정화 청소대상시설 관리현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당분기말 실내공기정화 청소대상 시설수를 기재</li> <li>(2) 금년도(당해연도)실내공기정화청소대상 시설수를 기재</li> <li>(3) 금년도(당해연도)실내공기정화청소대상 시설중 당분기에 청소를 실시한 시설수</li> <li>(4) 당분기의 감시 실시건수를 기재</li> <li>(5) 당분기 위반건수를 기재, ⑥+⑦을 기재</li> <li>(6) 당분기 감시건수중 청소 미실시사항 적발한 건수를 기재</li> <li>(7) (6)이외의 기타 위반사항을 기재</li> <li>(8) ⑨+⑩+⑪을 기재하고 (5)와 일치하여야 한다.</li> <li>(12) ⑬+⑭를 기재</li> <li>(13) 신고시설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li>(14) 미신고시설에 대한 고발건수를 기재</li> </ul>

표 측	<p>(1) ②+③+④+⑤+⑥+⑦+⑧+⑨를 기재</p> <p>(2) 연면적 5천제곱미터이상의 사무용 건축물</p> <p>(3)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복합 건축물</p> <p>(4) 공연법에 의한 객석수 2천석이상의 공연장</p> <p>(5)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학원</p> <p>(6) 도·소매진흥법에 의하여 개설허가를 받은 대형점·대규모소매점·도매 센터</p> <p>(7)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지하상가</p> <p>(8) 가정의례에관한법률에 의한 연면적 3천제곱미터이상의 결혼예식장</p> <p>(9)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한 2천명이상의 관객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체육시설</p>
표 두	<p>바. 공중이용시설 위생검사기관·실내공기정화청소대행 인정기관 및 관리현황</p> <p>(1) 당분기말 기관수를 기재</p> <p>(2) 당분기의 감시 실시건수를 기재</p> <p>(3) 당분기 위반건수를 기재, ④+⑤+⑥+⑦+⑧을 기재</p> <p>(8) (4)~(7) 이외의 기타 위반건수를 기재</p> <p>(9) 당분기의 행정처분 건수 ⑩+⑪+⑫+⑬을 기재하고 (3)과 일치하여야 한다.</p> <p>(14) ⑮+⑯을 기재</p> <p>(15) 지정(인정)기관에 대한 고발건수 기재</p> <p>(16) 미지정(미인정)기관에 대한 고발건수 기재</p>
표 측	<p>(1) ②+③을 기재</p> <p>(2) 공중위생법 제3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서 지정한 공중이용시설위생검사기관의 수를 기재</p> <p>(3) 공중위생법 제27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시·도에서 인정한 실내공기정화청소대행업자의 수를 기재</p>

### Ⅲ. 보건복지부 통계업무규정

**여 백**

## 보건복지부통계업무규정

###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통계법에 의한 보건복지부 소관 통계의 작성·결과공표 및 간행물 발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조정하고, 보건복지통계를 정비발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통계업무의 관장) ①통계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를 관장하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관 국장이 행하며, 기획관리실장은 이를 총괄한다.

②소속기관 및 단체의 통계업무는 통계작성과 관련되는 당해업무에 관하여 소속기관 및 단체를 관장하는 심의관 및 국장 등(이하 "국장"이라 한다)이 이를 총괄한다. 제3조(통계사무의 개선 및 자료제출 요구) 기획관리실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또는 이 규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장에 대하여 통계작성의 실시·중지·변경 또는 통계작성사무의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관계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4조(지정기관의 지정) 국장은 통계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청장에게 소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를 통계작성기관으로 지정하도록 신청하게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정기관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지정신청기관의 정관 1부(산하단체에 한함)
2. 통계작성을 전담하는 조직 및 인력현황 자료
3.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명세서

제5조(통계작성의 승인 등) ①국장은 통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새로운 통계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제2호서식의 통계작성승인신청서에 조사경비명세서, 통계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 및 다른통계의 모집단자료로의 활용에 관한 사항(지정 통계에 한함)을 첨부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승인을 얻은 통계작성을 중지하거나 승인을 얻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국장은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하는 통계의 경우로서 그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통계작성협의신청서를 제출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협의를 거친 통계작성

을 중지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승인을 받은 통계중 조사통계에 대하여는 제1항의 규정의 예에 따라 매년도마다 조사통계 계획을 수립하여 2월말까지 기획관리실장에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관리실장은 제출받은 계획에 대하여 당해통계의 작성에 앞서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건복지부통계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조사통계의 성격상 또는 당해 조사통계에 대하여 관련전문가 또는 관련전문기관의 자문을 받아 심의가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제6조(자료제출명령)** 국장은 통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지정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로 하여금 관계되는 자료의 제출을 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과 협의 하여야 한다.

1. 지정통계의 명칭
2. 통계작성기관의 명칭
3. 자료제출 요구사유
4. 제출할 자료의 내용
5. 자료제출의 기한 및 장소

**제7조(통계결과의 공표등)** ①통계법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를 작성한 국장은 지체없이 그 결과를 기획관리실장에게 통계표, 통계결과에 대한 해설 및 분석자료를 제출하고 기획관리실장과의 협의를 거친 후에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공표하지 않을 수 있다.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한 통계결과에 후속하여 작성되는 통계결과에 관하여 협의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이를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③기획관리실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협의를 거치지 아니하는 통계결과에 있어서 작성방법이 부적합하게 되거나 통계결과의 신뢰성이 저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시 협의를 거쳐 공표하게 할 수 있다.

④국장은 제1항 본문·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결과를 공표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통계결과(통계표를 포함한다)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 ①통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의 수록을 목적으로 하는 간행물(이하 "통계간행물"이라 한다)을 발간하고자 하는 국장은 별지 제4호서식의 통계간행물 발간승인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미리 기획관리실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 통계간행물 원고 또는 사본

2. 소요예산 산출명세

3.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4. 통계간행물 변경명세(내용변경시만 작성)

②기획관리실장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통계간행물의 신속한 발간을 위하여 최초로 발간하는 때에 발간의 승인을 얻은 통계간행물에 대하여는 별도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발간하게 할 수 있다.

③승인을 얻은 통계간행물의 명칭·발간주기 또는 수록된 통계표의 2분의 1이상을 변경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하고자 하는 국장은 미리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승인을 얻은 통계간행물의 발간을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 지체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기획관리실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통계간행물을,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통계간행물발간내역통보서에 당해 통계간행물 및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를 첨부하여 지체없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 또는 제출하여야 한다

⑤통계간행물의 발간승인사항을 변경(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승인을 받은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장은 그 변경내용을 당해 통계간행물에 명시하여 지체없이 기획관리실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제9조(보고통계의 접수 및 집계) ①보고통계의 접수 및 집계는 국장이 행한다. 다만 집계를 전산처리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획관리실장에게 그 집계처리를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거 국장은 집계결과를 기획관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기획관리실장은 전산처리결과를 국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제 2 장 통계위원회

제10조(위원회의 설치) 보건복지통계의 작성계획 및 통계결과의 심의 조정을 하여 보건복지부장관소속하에 보건복지부통계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1조(위원회의 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차관이 되고, 부위원장은 기획관리실장이 된다.

③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보건사회부 본부 각 국장 및 심의관



2. 보건복지통계 유관기관의 및 단체의 공무원 또는 직원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위촉하는 자
3. 보건 또는 사회관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보건복지장관이 위촉하는 자

제12조(위원의 임기) 제11조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필요시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3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보건복지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기본통계의 작성 및 조사에 관한 사항
2. 조사통계계획안의 심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조사통계결과의 검토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4. 통계업무의 개선발전에 관한 사항
5.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

제14조(위원장)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통리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5조(회의)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이하 "회의"라 한다.)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의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가진다.

제16조(회의결과의 보고) 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지체없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7조(의견의 청취)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관련분야의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공무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 또는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분과위원회 등) ①위원회에는 보건통계분과위원회와 복지통계분과위원회를 둔다. 또한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에 분야별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보건통계분과위원회의 위원장은 보건국장이고, 복지통계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사회복지심의관이 된다. 또한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③분과위원회와 위원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19조(분과위원회 등의 기능) ①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는 보건복지통계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조정한다.

1. 위원회에서 위임한 사항

2. 기타 위원장이 요청한 사항

②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이때 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위원회에서 심의조정된 것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0조(준용) 제14조 내지 제17조의 규정은 이를 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에 준용한다.

제21조(간사) ①위원회 및 분과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전산통계담당관이 되고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제22조(수당) 위원회, 분과위원회 및 분야별 소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조(연구의 위탁)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부통계의 개선과 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위원에게 연구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에게 위탁한 사항에 소요되는 경비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제 3 장 통계주관연구기관 및 통계발전실무작업반

제24조(주관연구기관의 지정) ①보건복지부장관은 보건복지통계의 정비발전을 위하여 통계법에 의한 통계작성기관중 관련전문연구기관을 보건복지통계주관연구기관(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제25조(주관연구기관의 기능) 주관 연구기관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행한다

1. 보건복지통계발전을 위한 장기발전방안연구
2. 장기발전을 위한 매년도 세부시행방안 연구
3.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실무작업반의 편성운영
4.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위탁하는 과제에 대한 연구

제26조(주관연구기관에 대한 지원 등) ①보건복지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주관연구기관에 인력 및 연구비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이때 협조를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7조(작업반의 설치) 보건복지통계 발전방안을 연구하고, 이를 검토추진하기 위하여 주관연구기관에 보건복지통계발전실무작업반(이하 "작업반"이라 한다)을 둔다.

제28조(작업반의 구성) ①작업반에 작업반장과 필요한 작업반원을 둔다.

②작업반장은 전산통계담당관과 주관연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되며, 작업반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보건복지부에서 통계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지방자치단체, 보건복지통계 유관기관의 공무원 또는 직원 중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3. 보건 또는 사회관계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위촉하는 자

제29조(작업반원의 임기) 작업반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매년도마다 임명,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30조(작업반의 기능) 작업반은 보건복지통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보건복지통계의 장기발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2. 외국·국제기구의 통계수집 및 우리나라 통계와 비교검토
3. 통계작성 및 작성방법변경을 위한 조치방안 강구
4. 기타 통계업무의 개선발전을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시하는 사항

제31조(작업결과의 보고) 작업반장은 작업반의 작업결과를 정기 또는 수시로 위원회 및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2조(분과반 등) ①작업반에는 총괄분과반, 보건통계분과반 및 복지통계분과반 등 분과반을 두고, 분과반에는 분야별작업팀을 두며, 필요한 경우 분야별작업팀에는 세부과제별작업팀을 둘 수 있다.

②분과반, 분야별작업팀 및 세부과제별작업팀에는 각각 반장 또는 팀장을 두며,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지명 또는 위촉한다.

제33조(작업반의 운영) ①작업반장은 분야별작업팀 및 세부과제 작업팀별로 작업내용을 설명하고 과제를 부여하는 등 작업을 총괄한다.

②분야별작업팀 및 세부과제별작업팀의 팀장은 팀원별로 작업을 할당하고 진행상황을 점검하며 작업결과를 종합하여 그 결과를 작업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기타 작업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한다.

제34조(작업반원에 대한 수당) 작업반에 참여한 반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

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되는 공무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정은 1997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보건복지통계위원으로 위촉된 자는 이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것으로 본다. 다만, 임기는 종전의 위촉기간에 의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 또는 협의된 사항은 이규정에 의하여 지정·승인 또는 협의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규정의 폐지) 보건사회부통계위원회규정(보건사회부에 규제329호)은 이를 폐지한다.

##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수신 통계청장 발 신 ㉠  
 제목 지정기관지정신청

통계법 제4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6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지정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① 기관의 명칭			
② 설립 근거			
③ 통계작성부서	부 서 명	실 · 국(부)	과
	인 력		
	경비(예산)		
④ 최근 3년동안 통계활동 실적	통계작성 현 황		
	통 계 간 행 물 발간현황		
⑤ 향 후 통 계 작 성 계 획			
⑥ 기 타			

- 구비서류 : 1 정관 2부  
 2 통계작성부서의 조직 및 인력 현황자료 2부.  
 3 통계작성에 필요한 예산명세서 2부  
 4 기타 관련자료

## 작 성 요 령

- ① 기관의 명칭 : 지정기관으로 지정받고자 하는 기관의 명칭을 씁니다.
- ② 설립근거 : 해당 기관의 설립근거가 되는 법령이나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은 내역을 씁니다.
- ③ 통계작성부서
- 부 서 명 : 통계의 기획·조사·처리 등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명을 씁니다.
  - 인 력 : 통계작성 부서에 근무하는 인원의 직급 및 수를 간략히 씁니다.
  - 경비(예산) : 통계작성과 관련있는 연간 총경비(예산)를 씁니다.
- ④ 최근 3년동안 통계활동 실적
- 통계작성현황 : 최근 3년간 실시한 통계작성 실적을 모두 씁니다.
  - 통계간행물 발간현황 : 최근 3년간 발간한 모든 통계간행물을 씁니다.
- ⑤ 향후 통계작성계획 : 향후 작성하려고 하는 통계가 있을 경우 그 작성계획을 간략히 씁니다.
- ⑥ 기타 : 위에서 열거한 사항 이외에 참고할 사항이 있을 경우 그 내용을 씁니다.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 . . . .
수신		발 신	①
제목 통계작성승인신청 통계법 제8조, 동법시행령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작성의 승인을 신청합니다.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통계 <input type="checkbox"/> 지정통계
③ 작 성 목 적			
④ 조사(보고)사항			
⑤ 조사(보고)대상	대 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모 집 단		
	대 상 수		
	대상지역		
	대상범위		
⑥ 작 성 기 준 시 점 (기간)		⑦ 조사(보고) 기 간	⑧ 작성주기
⑨ 조 사 방 법	작 성 형 태	<input type="checkbox"/> 조 사 <input type="checkbox"/> 보고(업무) <input type="checkbox"/> 가 공	
	조사(보고)대상선정	<input type="checkbox"/> 전수 <input type="checkbox"/> 확률표본 <input type="checkbox"/> 유의표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 료 수 집 방 법	<input type="checkbox"/> 자계식면접 <input type="checkbox"/> 타계식면접 <input type="checkbox"/> 우편(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⑩ 조사표(보고서식) 응답자 특성 및 근거자료	응답자 특성		
	근거자료		
⑪ 조사(보고) 계통			
⑫ 통계결과의 공표	1. 공표예정일 . . . . . 2. 공표방법 :		
⑬ 통계관계서류 보존	1. 조사표 보존기간 :    년    2. 전산테이프 보존기관 :    년 3. 전산테이프 보존방법 :		
⑭ 통 계 조 사 원	1 조사원수 :    명    2. 조사원특성 :		
⑮ 기    타			
구비서류 : 1 조사표(보고서식) 4부    2 결과표 서식 2부    3. 조사경비명세서 2부 4. 통계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지정통계에 한함) 2부 5.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의 활용에 관한 사항(지정통계에 한함) 2부			

## 작 성 요 령

- ④ 조사(보고)사항 : 조사 및 보고항목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수를 씁니다.  
(예 : 사업체일반사항 ○개항목, 고용관련 ○개항목, 급여관련 ○개항목 등)
- ⑤ 조사(보고)대상
- 모 집 단 : 표본조사의 경우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명을 씁니다.  
(예 : 전국의 모든 가구, 전국에 있는 종업원 5인이상의 제조업체 등)
  - 대 상 수 : 조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개인·가구·사업체 등의 수를 기입하고, 보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최초로 보고서식을 작성하는 기관수를 씁니다.  
(예 : 전국의 270개 시·군·구,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3000가구 등)
  - 대상지역 : 조사 또는 보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전국,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씁니다.
  - 대상범위 :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그 범위를 씁니다.  
(예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F 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 69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
- ⑩ 조사표(보고서식)응답자 특성 및 근거자료
- 응답자 특성 : 조사표나 보고서식을 기입하여야 할 사람이 특정한 신분·지위  
(예 : 대표자, 경영관리중) 등을 가져야 할 경우에 씁니다.
  - 근거자료 :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보고통계의 경우 보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명을 씁니다.  
(예 : 광공업통계조사 — 사업체의 결산서,  
토지거래현황통계 — 토지거래허가대장 및 신고대장)
- ⑪ 조사(보고)계통 : 조사표나 보고서식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씁니다.  
(예 : 읍·면·동 → 시·군·구(. .과) → 시·도(. .과) → 내무부(. .과))
- ⑭ 통계조사원
- 조사원특성 : 조사원이 직원, 경상 또는 임시조사원인지를 기입하고 임시조사원의 경우 주부, 학생, 전문지식소유자료 구분하여 씁니다.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신		발 신	㉑
제목 통계작성협의신청 통계법 제9조제1항, 동법시행령 제11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작성에 관한 협의를 신청합니다.			
① 통계의 명칭		② 통계의 종류	<input type="checkbox"/> 일반통계 <input type="checkbox"/> 지정통계
③ 작성 근거법률			
④ 조사(보고)사항			
⑤ 조사(보고)대상	대 상	<input type="checkbox"/> 개인 <input type="checkbox"/> 가구 <input type="checkbox"/> 사업체 <input type="checkbox"/> 기타( )	
	모 집 단		
	대 상 수		
	대상지역		
	대상범위		
⑥ 작성 기준 시점 (기간)		⑦ 조사(보고) 기간	
⑨ 조사 방법	작성 형태	<input type="checkbox"/> 조사 <input type="checkbox"/> 보고(업무) <input type="checkbox"/> 가공	
	조사(보고)대상선정	<input type="checkbox"/> 전수 <input type="checkbox"/> 확률표본 <input type="checkbox"/> 유의표본 <input type="checkbox"/> 기타( )	
	자료수집방법	<input type="checkbox"/> 자계식면접 <input type="checkbox"/> 타계식면접 <input type="checkbox"/> 우편(모사전송) <input type="checkbox"/> 전화 <input type="checkbox"/> 기타( )	
⑩ 조사표(보고서식) 응답자 특성 및 근거자료	응답자 특성		
	근거자료		
⑪ 조사(보고) 계통			
⑫ 통계결과의 공표	1. 공표예정일 . . . . . 2. 공표방법 :		
⑬ 통계관계서류 보존	1. 조사표 보존기간 : . . . . . 년		
	2. 전산테이프 보존기관 : . . . . . 년		
⑭ 통계조사원	3. 전산테이프 보존방법 :		
	1. 조사원수 : . . . . . 명 2. 조사원특성 . . . . .		
⑮ 기타			
구비서류 . 1. 조사표(보고서식) 4부 2. 결과표 서식 2부 3. 조사경비명세서 2부 4. 통계결과의 이용에 관한 사항(지정통계에 한함) 2부 5. 다른 통계의 모집단자료로의 활용에 관한 사항(지정통계에 한함) 2부			

## 작 성 요 령

- ① 통계명칭 :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로서 통계법 제9조의 규정에 의거 통계청장의 작성협의를 받는 통계의 명칭을 씁니다.
- ② 작성근거법률 : 통계작성의 근거가 되는 관련 법조항을 씁니다.
- ④ 조사(보고)사항 : 조사 및 보고항목을 주요 부문별로 구분하여 항목별 항목수를 씁니다.  
(예 : 사업체일반사항 ○개항목, 고용관련 ○개항목, 급여관련 ○개항목 등)
- ⑤ 조사(보고)대상
  - 모 집 단 : 표본조사의 경우 조사하고자 하는 모집단명을 씁니다.  
(예 : 전국의 모든 가구, 전국에 있는 종업원 5인이상의 제조업체 등)
  - 대 상 수 : 조사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조사대상이 되는 개인·가구·사업체 등의 수를 기입하고, 보고에 의하여 작성되는 통계의 경우 최초로 보고서식을 작성하는 기관수를 씁니다.  
(예 : 전국의 270개 시·군·구, 전국에서 표본추출한 3000가구 등)
  - 대상지역 : 조사 또는 보고가 전국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경우에는 전국, 특정지역에 한정하여 실시되는 경우에는 그 지역을 씁니다.
  - 대상범위 : 조사 또는 보고의 대상이 되는 응답자의 속성과 그 범위를 씁니다.  
(예 :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대분류 F건설업에 해당하고 건설업면허를 소지한 업체, 전국 69개 도시의 근로자 가구 등)
- ⑩ 조사표(보고서식)응답자 특성 및 근거자료
  - 응답자 특성 : 조사표나 보고서식을 기입하여야 할 사람이 특정한 신분·지위  
(예 : 대표자, 경영관리층) 등을 가져야 할 경우에 씁니다.
  - 근거자료 : 조사통계의 경우 조사표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보고통계의 경우 보고의 근거가 되는 자료명을 씁니다.  
(예 : 광공업통계조사 - 사업체의 결산서,  
토지거래현황통계 - 토지거래허가대장 및 신고대장)
- ⑪ 조사(보고)계통 : 조사표나 보고서식이 작성되어 통계작성기관까지 수집되는 계통을 씁니다.  
(예 : 읍·면·동 → 시·군·구(.과) → 시·도(.과) → 내무부(.과))
- ⑭ 통계조사원
  - 조사원특성 : 조사원이 직원, 경상 또는 임시조사원인지를 기입하고 임시조사원의 경우 주부, 학생, 전문지식소유자로 구분하여 씁니다.

##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 . . . .

수신 발 신 ㉞

제목 통계간행물발간승인신청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간행물 발간승인을 신청합니다.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② 발 간 기 관		③ 편 집 부 서	과(담당관)
④ 발 간 목 적			
⑤ 소 요 예 산	천원	⑥ 단 가	
⑦ 발 간 주 기		⑧ 발 간 부 수	
⑨ 규 격	× cm	⑩ 판 매 여 부	
⑪ 쪽 수		⑩-1 판매방법	위 탁 부
⑫ 지 질			복 제 부
⑬ 인 쇄 방 법			직접판매 부
⑭ 발간 예정일		⑩-2 판매가격	

- 구비서류 : 1. 통계간행물 원고(또는 사본) 2부  
 2. 소요예산 산출명세 2부  
 3.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2부(양식은 뒤쪽 참조)  
 4. 통계간행물 변경명세(내용변경시에만 작성) 2부

## 작 성 요 령

-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 간행물의 표지에 실린 간행물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 ② 발간기관 :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명칭을 씁니다.
- ③ 편집부서 : 통계간행물 발간을 위한 자료편집부서를 씁니다.
- ⑤ 소요예산 : 부가세를 포함한 총소요예산을 씁니다.
- ⑦ 발간주기 : 주, 격주, 월, 격월, 분기(계간포함), 반년, 연, 2년, 3년, 5년, 10년 ....., 부정기등으로 씁니다.
- ⑩ 판매여부 : 비매 또는 위탁, 복제, 직접판매 여부를 씁니다.
- ⑪ 쪽 수 : 부록을 포함한 전체 쪽수(겉표지 제외)를 쓰되, 간행물이 2권이상일 때에는 각권의 쪽수를 각각 씁니다.
- ⑬ 인쇄방법 : 표지, 도표를 제외한 본문(통계표등)의 인쇄방법만 씁니다.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양식〉

배 부 처	부 수(권)	비 고
합 계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 . . . .
수신			발 신 ㉠
제목 통계간행물발간내역통보 통계법 제1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통계간행물 발간내역을 통보합니다.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② 발 간 기 관		③ 편 집 부 서	과(담당관)
④ 발 간 목 적			
⑤ 소 요 예 산	천원	⑥ 단 가	
⑦ 발 간 주 기		⑧ 발 간 부 수	
⑨ 규 격	× cm	⑩ 판 매 여 부	
⑪ 쪽 수		⑩-1 판매방법	위 탁 부
⑫ 지 질			복 제 부
⑬ 인 쇄 방 법			직접판매 부
⑭ 발 간 일		⑩-2 판매가격	
⑮ 통계간행물 승인번호			
구비서류 . 1. 통계간행물 책자 6부 2. 통계간행물 배부계획서 2부 4. 통계간행물 변경명세(내용변경시에만 작성) 2부			

## 작 성 요 령

- ① 통계간행물의 명칭 : 간행물의 표지에 실린 간행물 명칭을 그대로 씁니다.
- ② 발간기관 : 통계간행물을 발간한 통계작성기관의 명칭을 씁니다.
- ③ 편집부서 : 통계간행물 발간을 위한 자료편집부서를 씁니다.
- ⑤ 소요예산 : 부가세를 포함한 총소요예산을 씁니다.
- ⑦ 발간주기 : 주, 격주, 월, 격월, 분기(계간포함), 반년, 연, 2년, 3년, 5년, 10년, ....., 부정기등으로 씁니다.
- ⑩ 판매여부 : 비매 또는 위탁, 복제, 직접판매 여부를 씁니다.
- ⑪ 쪽 수 : 부록을 포함한 전체 쪽수(겉표지 제외)를 쓰되, 간행물이 2권이상일 때에는 각권의 쪽수를 각각 씁니다.
- ⑬ 인쇄방법 : 표지, 도표를 제외한 본문(통계표등)의 인쇄방법만 씁니다.

〈통계간행물 변경내역 양식〉

배 부 처	부 수(권)		비 고
	변 경 전	변 경 후	

# 기 관 명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담당

문서번호 시행일 . . .

수신

참조

제목 : ○○통계자료에 대한 제 차 독촉

통계법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의 통계자료에 관한 보고를 제( )차 독촉하니 . 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① 통계작성승인번호 :
- ② 통계의 명칭 :
- ③ 보 고 사 항 :
- ④ 보 고 기 일 :

(기관장)

인

(발 신 용)

( 뒷 쪽 )

## 작 성 요 령

- ③ 보고사항 : 보고되어야 할 통계의 보고내용 또는 이미 송부한 자료중 누락되어 보고 받고자 하는 내용을 씁니다.
  
- ④ 보고기일 : 회신기관에서 통계자료를 보고하여야 할 날짜를 씁니다.